

## ● 개별 법령 참고 자료

연번 1 :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,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,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,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(국제대회지원법)

### ■ 목적

2011년에 개최되는 제13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, 2013년에 개최되는 제42회 세계조정선수권대회, 2014년에 개최되는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·제11회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년에 개최되는 제28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 (법 제1조)

### ■ 대상 공익사업 : 대회관련시설의 설치·이용 등에 관한 계획에 따른 사업 (법 제22조, 제29조 제1항)

- 사업시행자 : 시·도지사 등 (법 제26조)
- 수용주체 : 시행자 (법 제29조제1항)

### ■ 상위 법정 계획

- 대회관련시설의 설치·이용 등에 관한 계획(사업계획) (법 제22조)

### ■ 사업인정의제 인허가 등 : 대회 관련 시설의 설치·이용 등에 관한 계획에 따른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·고시 (법 제29조제2항, 제27조제4항)

- 공고·고시 : 고시(공보)
- 토지세목여부 : ○ (시행령 제15조)
- 인허가권자 : 시·도지사(대구시장,충북도지사,인천시장,인천시장,광주시장)

### ■ 특례

- 재결신청기간 : 시행자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 (법 제29조제2항)

### ■ 목적사업이외의 시행가능사업 (법 제28조)

-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
- 체육시설 설치·이용사업
- 관광숙박업·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사업계획 및 관광지·관광단지 조성사업계획
-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
- 택지개발사업(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지구)
-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
- 주택사업(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)

■ 폐지됨 2019.1

## ■ 목적

2018년에 개최되는 제23회 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3회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올림픽 유산을 공고히 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 (법 제1조)

## ■ 대상 공익사업

- (1) 대회관련시설의 설치·이용 등에 관한 계획에 따른 사업 (법 제37조제1항)
- (2) 동계올림픽 특구개발사업 (법 제58조제1항)

### ■ 사업 시행자

- (1) 도지사, 시장·군수 등 (법 제30조)
- (2) 도지사, 지방자치단체·정부투자기관·지방공기업, 중소기업진흥공단, 한국산업단지공단, 요건을 갖춘 건설업자 등 (법 제48조)

### ■ 수용주체

- (1) 시행자 (법 제37조제1항)
- (2) 특구사업시행자 (법 제58조제1항)

## ■ 상위 법정 계획

- (1) 대회종합계획 및 세부운영계획 (법 제5조)
- (1) 대회관련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계획 (법 제5조)
- (1) 대회관련시설의 설치·이용 등에 관한 계획(사업계획 (법 제27조)
- (2) 동계올림픽특구에 관한 종합계획(특구종합계획) (법 제40조)
- (2) 동계올림픽특구관광개발계획(특구관광개발계획) (법 제69조)

## ■ 사업인정의제 인허가 등

- (1) 대회 관련 시설의 설치·이용 등에 관한 계획에 따른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·고시 (법 제37조제1항, 제31조제2항)
- (2) 동계올림픽 특구종합계획의 고시(계획에 토지세목이 포함된 경우) 또는 동계올림픽 특구실시계획의 승인·고시 (법 제58조제1항, 제50조제1항)

■ **공고·고시**

- (1) 고시(공보)
- (2) 고시(공보, 실시계획) 또는 관보고시(종합계획)

■ **토지세목여부** : (1) ○, (2) ○

■ **인허가권자**

- (1) 도지사(강원도지사)
- (2) 문화체육관광부장관(특구종합계획에 세목이 포함되어 수립된 경우)

■ **재결신청기간**

- (1) 시행자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 (법 제37조제2항)
- (2) 특구종합계획에서 정하는 기간 내 또는 특구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 이내 (법 제58조제2항)

■ **목적사업이외의 시행가능사업** (법 제33조, 제57조)

(1) **대회관련시설의 설치·이용 등에 관한 계획에 따른 사업**

-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
- 체육시설 설치·이용사업
- 관광숙박업·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 및 관광지·관광단지 조성사업계획
- 도시개발사업
-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
- 소규모 주택정비사업
-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
- 택지개발사업
-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
- 주택사업(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)
-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

(2) **동계올림픽 특구개발사업**

-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
- 체육시설 설치·이용사업
- 관광숙박업·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 및 관광지·관광단지 조성사업계획
- 도시개발사업
-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
-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
- 택지개발사업
-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
- 소규모 주택정비사업

- 지역종합개발사업
- 물류단지 개발사업
- 주택사업(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)
- 대규모점포 개설(대형마트, 백화점, 쇼핑센터, 복합쇼핑몰 등)

## 연번 4 :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(간선급행버스법)

### ■ 목적

대도시권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사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(법 제1조)

### ■ 대상 공익사업 : 간선급행버스체계건설사업 (법 제10조제1항)

- **사업 시행자** :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공기관이나 정부출연기관, 지방공사, 지방자치단체조합 등(법 제6조)
- **수용주체** : 사업시행자 (법 제10조제1항)

### ■ 상위 법정 계획

-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 (법 제4조)
- 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계획(법 제5조)

### ■ 사업인정의제 인허가 등 : 체계건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·고시 (법 제10조제2항, 제7조제6항)

- **공고·고시** : 고시(일간신문에 한 번 이상 공고하거나 인터넷에 14일 이상 게시, 시행령 제8조), 공고
- **토지세목여부** : ○
- **인허가권자** : 시·도지사, 국토교통부장관

### ■ 특례

- **재결신청기간** :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이내 (법 제10조제2항)
- **재결 관할** : 중앙토지수용위원회(법 제10조)

### ■ 목적사업이외의 시행가능사업

-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

## ■ 목적

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(법 제1조)

## ■ 대상 공익사업 : 간척지활용사업 (법 제19조제1항)

- **사업 시행자** : 국가, 지방자치단체, 한국농어촌공사,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, 조합 및 중앙회, 지방공기업 등 (법 제11조)
- **수용주체** : 사업시행자 (법 제19조제1항)

※ 대상은 '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' 상 공익사업이면서 토지면적 2/3이상 확보(취득 또는 동의), 토지소유자 1/2이상 동의 필요(법 제19조제2항)

## ■ 상위 법정 계획

-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 (법 제5조)
-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 (법 제5조제5항)

## ■ 사업인정의제 인허가 등 :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·고시 (법 제19조제3항, 제8조제2항)

- **공고·고시** : 고시(관보)
- **토지세목여부** : -
- **인허가권자** : 농림축산식품부장관

## ■ 특례

- **재결신청기간** :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기간 내 (법 제19조제3항)

## ■ 목적사업이외의 시행가능사업 :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(법 제16조)

■ 목적

건설기계의 등록·검사·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 (법 제1조)

■ 대상 공익사업 : 공영주기장 설치 사업 (법 제33조의3제1항)

- 사업 시행자 : 시·도지사 또는 시장 등 (법 제33조의2)
- 수용주체 : 시·도지사, 시·군·구청장 (법 제33조의3제1항)

■ 상위 법정 계획

- 공영주기장의 설치·운영에 관한 계획(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수립) (법 제33조의2)

■ 사업인정의제 인허가 등 : 공영주기장의 설치·운영계획의 수립 인가 및 공고 (법 제33조의3제2항, 제33의2조제3항)

- 공고·고시 : 공고(절차는 미규정)
- 토지세목여부 : -
- 인허가권자 : 시·도지사 (시·도지사가 세우는 계획의 인가 주체는 없음)

■ 목적사업이외의 시행가능사업 : -

■ 목적

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 (법 제1조)

■ 대상 공익사업 :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(법 제13조제1항)

- 사업 시행자 : 국가·지방자치단체 등 (법 제8조의3)
- 수용주체 : 개발사업시행자 (법 제13조제1항)

■ 상위 법정 계획

-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 (법 제3조의2)

■ 사업인정의제 인허가 등 :

-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개발계획 고시(구역지정 시 수립하는 개발계획에 토지세목이 포함된 경우)(법 제13조제2항, 제4조제8항)
- 실시계획 승인·고시 (법 제13조제2항, 법 제10조제1항)
- **공고·고시** : 고시(관보; 개발계획), 고시(공보; 실시계획)
- **토지세목여부** : ○ (실시계획 승인신청서)
- **인허가권자** : 시·도지사, 산업통상자원부장관

■ 특례

- **재결신청기간** :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기간 내 (법 제13조제2항)
- **재결 관할** : 중앙토지수용위원회(법 제13조)

■ 목적사업이외의 시행가능사업 (법 제11조)

-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
- 도시개발사업
- 택지개발사업
- **산업단지개발사업(국가,일반,도시첨단)**
- 물류단지 조성사업
- 체육시설 설치·이용사업
-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
-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
- 소규모주택 정비사업
- 물류단지개발사업
- 대규모점포 개설(대형마트, 백화점, 쇼핑센터, 복합쇼핑몰 등)
- 주택사업(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)
- 관광숙박업·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 및 관광지·관광단지 조성사업계획

## ■ 목적

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고도(古都)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·육성함으로써 고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민의 생활을 개선하여 고도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기여 (법 제1조)

## ■ 대상 공익사업 : 고도보전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(법 제17조제1항)

- 사업 시행자 :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행자로 지정한 자 (법 제15조)
- 수용주체 : 사업시행자 (법 제17조제1항)

## ■ 상위 법정 계획

-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(법 제8조)
-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 (법 제8조의 2)

## ■ 사업인정의제 인허가 등 : 지구의 지정(법 제17조제2항, 법제10조제1항)

-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의 지정
-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의 지정
- 공고·고시 : 고시(관보)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그 사본의 내용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 또는 시·군·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
- 토지세목여부 : -
- 인허가권자 : 문화재청장

## ■ 특례

- 재결신청기간 :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 효력 기간 미적용(법 제17조제4항)
- 재결 관할 : -

## ■ 목적사업이외의 시행가능사업 (법 제12조)

- 도시개발사업
- 택지개발사업
- 관광숙박업·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 및 관광지·관광단지 조성사업계획
- 체육시설 설치·이용사업

-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
-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
- 소규모주택 정비사업
-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

## 연번 9 :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(공간정보법)

### ■ 목적

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(地籍公簿)·부동산종합공부(不動產綜合公簿)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해상교통의 안전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 (법 제1조)

### ■ 대상 공익사업 : 기본 측량 실시 (법 제103조제1항)

- 사업 시행자 : 국토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(법 제103조)
- 수용주체 : 국토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(법 제103조)

### ■ 상위 법정 계획

- 측량기본계획 (법 제5조)
- 측량기본계획의 년도별 시행계획 (법 제5조)
- 수로조사기본계획 (법 제30조)
- 수로조사기본계획의 년도별 시행계획 (법 제30조)

### ■ 사업인정의제 인허가 등 : 사업인정의제 규정 없음

- 공고·고시 : 공고(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하거나 해당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“라 한다)의 게시관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시, 시행령 12조)
- 토지세목여부 : -
- 인허가권자 : 국토교통부장관

### ■ 목적사업이외의 시행가능사업 -

■ 목적

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해당 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(법 제1조)

■ 대상 공익사업 : 혁신도시개발사업 (법 제15조제1항)

- 사업 시행자 :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, 공기업 등 (법 제10조)
- 수용주체 : 사업시행자 (법 제15조제1항)

■ 상위 법정 계획

-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(법 제4조)
-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지원계획(법 제5조)
-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·시행(법 제5조의 2)

■ 사업인정의제 인허가 등 :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 지정·고시 (법 제15조제2항, 제7조제3항)

- 공고·고시 : 고시(관보)
- 토지세목여부 : ○
- 인허가권자 : 국토교통부장관

■ 특례

- 재결신청기간 :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이내 (법 제15조제3항)
- 재결 관할 : 중앙토지수용위원회(법 제15조)

■ 목적사업이외의 시행가능사업(법 제14조)

-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
- 도시개발사업
- 택지개발사업
- **항만공사사업**
-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
- **산업단지개발사업(국가,농공)**

- 관광숙박업·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 및 관광지·관광단지 조성사업계획
-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(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포함)
-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
- 체육시설 설치·이용사업
- 물류단지 개발사업
- 주택사업(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)
- 대규모점포(대형마트, 백화점, 쇼핑센터, 복합쇼핑몰 등) 개설

## 연번 11 : 공공주택 특별법(공공주택특별법)

### ■ 목적

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 (법 제1조)

### ■ 대상 공익사업 :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(법 제27조제1항)

- 사업 시행자 : 국가 등 (법 제5조), 민간은 공공기관과 공동법인 또는 공동사업방식
- 수용주체 : 공공주택사업자 (법 제27조제1항)

### ■ 상위 법정 계획

- 주거종합계획(10년 계획) (주거기본법 제5조)
- 주거종합계획(년도별 계획) (주거기본법 제5조)
- 시도종합계획(10년 계획) (주거기본법 제6조)
- 시도주거종합계획(10년 계획) (주거기본법 제6조)
- 공공주택 공급·관리계획(수립주체: 국토교통부 장관) (법 제3조 제2항)
- 공공주택 공급·관리계획(수립주체: 지방자치단체장) 법 제3조제6항)

### ■ 사업인정의제 인허가 등 : 공공주택지구 지정·고시 (법 제27조제2항, 제12조제1항)

- 공고·고시 : 고시(관보)
- 토지세목여부 : ○
- 인허가권자 : 국토교통부장관

### ■ 특례

- 재결신청기간 : 지구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 (법 제27조제3항)
- 재결 관할 : 중앙토지수용위원회(법 제27조)

■ 목적사업이외의 시행가능사업 (법 제18조) 도시개발사업

- 산업단지개발사업(국가,일반,도시첨단)
- 체육시설 설치·이용사업
-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
- 도시개발사업
- 주택사업(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)
- 항만공사사업

**연번 12 :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(공공토지비축법)**

■ 목적

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에 이바지 (법 제1조)

■ 대상 공익사업 : 공공개발용 토지의 취득 (법 제16조제1항)

- 사업 시행자 : 한국토지주택공사
- 수용주체 : 한국토지주택공사

■ 상위 법정 계획

-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(법 제4조)
-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(법 제5조)

■ 사업인정의제 인허가 등 : 사업인정의제 규정 없음(비축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경우 원래 공익사업시행자의 토지 취득 및 보상과 관련한 권리,의무를 승계)(법제16조제2항)

- 공고·고시 : 고시(관보)
- 토지세목여부 : ○
- 인허가권자 : 국토교통부장관

■ 특례

- 재결신청기간 : -
- 재결 관할 : 중앙토지수용위원회

■ 목적사업이외의 시행가능사업 : -

■ 목적

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며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 (법 제1조)

■ 대상 공익사업 : 방치건축물 정비사업 (법 제11조제1항)

- 사업 시행자 : 시·도지사 (법 제11조)
- 수용주체 : 시·도지사 (법 제11조제1항)

■ 상위 법정 계획 :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 (법 제5조)

■ 사업인정의제 인허가 등 :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고시 (법 제11조제2항, 제6조제4항)

- 공고·고시 : 고시(공보)
- 토지세목여부 : -
- 인허가권자 : 시도지사(수립권자)

■ 특례

- 재결신청기간 : -
- 재결 관할 : -

■ 목적사업이외의 시행가능사업 -

## ■ 목적

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 하는 것 (법 제1조)

## ■ 대상 공익사업 : 관광지·관광단지 조성사업(법 제61조제1항)

- (1) 관광지 조성사업
- (2) 관광단지 **개발사업**

■ **사업 시행자** :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(법제55조)

■ **수용주체** : 사업시행자

※ 민간개발자는 **사업인정의제 및 수용전** 대상 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이상 취득 필요(법제54조)

## ■ 상위 법정 계획

- 관광개발 기본계획 (법 제49조제1항)
-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(법 제49조제2항)

## ■ 사업인정의제 인허가 등 : 조성계획의 승인 (법 제58조제1항제13호, 제54조제1항)

※ 조성계획 승인전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필요(**법 제54조제2항**)

- (1) 관광지 조성계획의 승인
- (2)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

■ **공고·고시** : (1) 고시, (2) 고시

■ **토지세목여부** : (1) ○, (2) ○

■ **인허가권자** : 시·도지사

## ■ 특례

■ **재결신청기간** : 조성사업시행기간(법 제61조제2항)

■ **재결 관할** : -

## ■ 목적사업이외의 시행가능사업(법 제16조, 제58조)

-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
- **항만공사사업**
- 온천개발사업
- **관광숙박업·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**
- **체육시설 설치·이용사업**
- 대규모점포(대형마트, 백화점, 쇼핑센터, 복합쇼핑몰 등) 개설

■ 목적

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호하고,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 (법 제1조)

■ 대상 공익사업 : 광해방지사업(광해방지시설의 설치·관리 및 유지)(법 제19조제1항)

- (1) 광해방지사업
- (2) 긴급광해방지사업

- 사업 시행자 : 국가, 광해지 사업자
- 수용주체 : 광해방지사업자 (법 제19조제1항)

■ 상위 법정 계획

- 광해방지 기본계획 (법 제7조)
- 광해방지 실시계획 (법 제8조)

■ 사업인정의제 인허가 등 : (1) 광해방지사업계획의 승인 (법 제19조제2항, 제8조제3항)  
(2) 긴급광해방지사업의 승인(사전보고) (법 제19조제2항, 제17조제2항)

- 공고·고시 : (1) 공고, (2) -
- 토지세목여부 : (1) -, (2) -
- 인허가권자 : (1) 산업통상자원부 장관, (2) 산업통상자원부 장관(사전보고 사후승인)

■ 특례

- 재결신청기간 :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 (법 제19조제2항)
- 재결 관할 : -

■ 목적사업이외의 시행가능사업 : -

■ 목적

광물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가 산업이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광업에 관한 기본 제도를 규정 (법 제1조)

■ 대상 공익사업 : 광업권자의 광업권(탐사권 및 채굴권)과 조광권자의 조광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(법 제70조, 제71조)

- 사업 시행자 : 광업권자, 조광권자
- 수용주체 : 광업권자, 조광권자

■ 상위 법정 계획 : -

■ 사업인정의제 인허가 등 :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정 (법 제73조제2항, 제72조제1항)

- 공고·고시 : -
- 토지세목여부 : -
- 인허가권자 : 산업통상자원부장관

■ 특례 : -

■ 목적사업이외의 시행가능사업 : -

## ■ 목적

교통체계의 효율성·통합성 및 연계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육상교통·해상교통·항공교통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과 각종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개발·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 (법 제1조)

## ■ 대상 공익사업 :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(국가기간, 광역, 일반) (법 제54조제1항)

- 사업 시행자 : 국가·지방자치단체 등 (법 제49조)
- 수용주체 : 사업시행자 (법 제54조제1항)
  - ※ 민간 시행자는 토지면적의 2/3이상 매입 필요(제54조)

## ■ 상위 법정 계획

- 국가기간교통망계획 (법 제4조)
- 중기 교통시설 투자계획 (법 제6조)
- 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 (법 제10조)
- 중기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 (법 제36조)
- 연계 교통체계 구축대책 (법 제38조)
-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 (법 제44조)
-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 (법 제73조)
- 교통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계획 (법 제73조)
- 지역의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기본계획(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) (법 제74조)

## ■ 사업인정의제 인허가 등 : 센터 지정·고시 또는 개발계획 고시 (법 제54조제2항, 제47조제1항)

- 공고·고시 : 고시(관보, 공보)
- 토지세목여부 : ○
- 인허가권자 :
  - 국토교통부장관
  - 시도지사

## ■ 특례

- 재결신청기간 :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(법 제54조제3항)
- 재결 관할 : 중앙토지수용위원회(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복합환승센터 안의 토지 등의 수용·사용, 법 제54조)

■ **목적사업이외의 시행가능사업**(법 제52조)

- 도시개발사업
-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
- 주택사업(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)
- 대규모점포 개설(대형마트, 백화점, 쇼핑센터, 복합쇼핑몰 등)

**연번 18 :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**(서울대법)

■ **목적**

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를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 (법 제1조)

■ **대상 공익사업** : 학교용지 확보 (법 제23조제1항)

- **사업 시행자** : 국가, 지자체 (법 제23조제1항)

■ **상위 법정 계획** : -

■ **사업인정의제 인허가 등** : 사업인정의제 규정 없음

■ **특례** :-

■ **목적사업이외의 시행가능사업** : -

## 연번 19 :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(인천대법)

### ■ 목적

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거점대학으로 육성 (법 제1조)

### ■ 대상 공익사업 : 학교용지 확보 (법 제23조제1항)

- 사업 시행자 : 국가, 지자체 (법 제23조제1항)

### ■ 상위 법정 계획 : -

### ■ 사업인정의제 인허가 등 : 사업인정의제 규정 없음

### ■ 특례 : -

### ■ 목적사업이외의 시행가능사업 : -

## 연번 20 : 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(국방시설사업법)

### ■ 목적

국방·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며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이바지 (법 제1조)

### ■ 대상 공익사업 : 국방·군사시설 사업 (법 제5조제1항)

- 사업 시행자 : 국방부 소속 기관장,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 등 (법 제3조)
- 수용주체 : 사업시행자 (법 제5조제1항)

### ■ 상위 법정 계획 : -

### ■ 사업인정의제 인허가 등 : 국방·군사시설 사업계획의 승인 고시 (법 제5조제3항, 제4조제4항)

- 공고·고시 : 고시(관보)
- 토지세목여부 : ○
- 인허가권자 : 국방부 장관

## ■ 특례

- **재결신청기간** : 사업계획 승인의 고시에서 정한 시행기간 내 (법 제5조제3항)

## ■ 목적사업이외의 시행가능사업 : -

### 연번 21 : 국제경기대회 지원법(국제경기대회지원법)

## ■ 목적

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 (법 제1조)

## ■ 대상 공익사업 : 대회관련시설의 설치·이용 등에 관한 계획에 따른 사업 (법 제28조제1항)

- **사업 시행자** : 시장·군수·구청장 등 (법 제24조)
- **수용주체** : 시행자 (법 제28조제1항)

## ■ 상위 법정 계획

- 대회종합계획 및 세부운영계획 (법 제9조)
- 대회관련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계획 (법 제9조)
- 대회관련시설의 설치·이용 등에 관한 계획(사업계획) (법 제21조)

## ■ 사업인정의제 인허가 등 : 대회관련시설의 설치·이용 등에 관한 계획에 따른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·고시 (법 제28조제2항, 제25조제2항)

- **공고·고시** : 고시(공보)
- **토지세목여부** : -
- **인허가권자** : 문화체육관광부장관

## ■ 특례

- **재결신청기간** :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 (법 제28조제2항)
- **재결 관할** : -

## ■ 목적사업이외의 시행가능사업(법 제27조)

-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

- 체육시설 설치·이용사업
- 관광숙박업·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 및 관광지·관광단지 조성사업
-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
- 택지개발사업
-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
- 주택사업(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)

## 연번 22 :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(국토계획법)

### ■ 목적

국토의 이용·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(법 제1조)

### ■ 대상 공익사업 :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 (법 제95조제1항)

- 사업 시행자 :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 (법 제86조)
- 수용주체 : 시행자 (법 제95조제1항)
  - ※ 국가·지방자치단체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사업시행자를 제외한 경우는 토지면적의 2/3이상 소유, 토지소유자총수의 1/2이상 동의 필요(제86조 제7항)

### ■ 상위 법정 계획

- 광역도시계획(국토부장관 수립) (법 제11조)
- 광역도시계획(시도지사 수립) (법 제11조, 제16조)
- 광역도시계획(시장군수 수립) (법 제11조, 제16조)
- 도시·군기본계획(특별시장 등이 수립) (법 제18조)
- 도시·군기본계획(시장등이 수립) (법 제18조)
- 도시·군관리계획(특별시장 등 입안) (법 제24조, 제29조, 제30조)
- 도시·군관리계획(시장등 입안) (법 제24조, 제29조, 제30조)
- 도시·군관리계획(도지사 입안) (법 제24조, 제29조, 제30조)
- 도시·군관리계획(국토부장관 입안) (법 제24조, 제29조, 제30조)

### ■ 사업인정의제 인허가 등 : 실시계획의 고시 (법 제96조제2항, 제88조제6항)

- 공고·고시 : 고시
- 토지세목여부 : ○
- 인허가권자 : 국토교통부장관(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시행자인 경우)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(그 밖의 시행자인 경우)

## ■ 특례

- **재결신청기간** :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 (법 제96조제2항)
- **재결 관할** : -

## ■ 목적사업이외의 시행가능사업

- 대규모점포 개설(대형마트, 백화점, 쇼핑센터, 복합쇼핑몰 등)
- **체육시설 설치·이용사업**
- **항만공사사업**

## 연번 23 :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(군공항이전법)

## ■ 목적

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지원 및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,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(법 제1조)

## ■ 대상 공익사업 : 군공항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 (법 제15조제1항)

- **사업 시행자** : 국방부 소속 기관장,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 등(법 제9조제1항내지제3항)
- **수용주체** : 사업시행자 (법 제15조제1항)

## ■ 상위 법정 계획

- 군공항이전부지 선정계획 (법 제7조)
-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 (법 제11조)
- 연차별 지원시행계획 (법 제12조)

## ■ 사업인정의제 인허가 등 :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 승인·고시 (법 제15조제2항, 제13조제1항)

- **광고·고시** : 관보 고시
- **토지세목여부** : ○
- **인허가권자** :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

## ■ 특례

- **재결신청기간** : 시행계획으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 내 (법 제15조제2항)

## ■ 목적사업이외의 시행가능사업(법 제14조)

- 체육시설 설치·이용사업
-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
- 택지개발사업

## 연번 24 :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(금강수계법)

## ■ 목적

금강수계(錦江水系)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, 금강·만경강 및 동진강 수계의 수자원(水資源)과 오염원(汚染源)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금강수계의 수질을 개선 (법 제1조)

## ■ 대상 공익사업 :

- (1) 수변생태벨트조성사업 (법 제25조제1항)
  - (2) 수질개선사업 (법 제25조제1항)
- **사업 시행자** : (1) 환경부장관, (2) 광역시·특별자치시장, 시장·군수·구청장
  - **수용주체** : (1)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(법 제25조제1항)  
(2) 수질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자 (법 제25조제1항)

## ■ 상위 법정 계획

- 수변구역관리 기본계획 (법 제4조의2)
-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(법 제9조)
-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(법 제10조)
-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(법 제11조)

## ■ 사업인정의제 인허가 등 : (1)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고시 (법 제25조제1항, 제4의3조제3항) (2)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승인 (법 제25조제1항, 제24조)

- **공고·고시** : (1) 고시 (2) -
- **토지세목여부** : (1) -, (2) -
- **인허가권자** : (1) 환경부장관, (2) 환경부장관

■ **특례**

- **재결신청기간** : (1)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 (법 제25조제1항)  
(2)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 (법 제25조제1항)
- **재결 관할** : 중앙토지수용위원회(법 제25조)

■ **목적사업이외의 시행가능사업** : -

**연번 25 :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(급경사지법)**

■ **목적**

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지정·관리, 정비계획의 수립·시행, 응급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경사지 붕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 (법 제1조)

■ **대상 공익사업** :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(법 제16조제1항)

- **사업 시행자** :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기관 (법 제2조)
- **수용주체** : 관리기관 (법 제16조제1항)

■ **상위 법정 계획** :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 (법 제12조)

■ **사업인정의제 인허가 등** :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 고시 (법 제16조제2항, 제13조제1항)

- **공고·고시** : 고시
- **토지세목여부** : -
- **인허가권자** : 관리기관 자체 수립

■ **특례**

- **재결신청기간** : 당해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기간 내 (법 제16조제2항)
- **재결 관할** : -

■ **목적사업이외의 시행가능사업** : -

■ 목적

민간기업이 산업·연구·관광·레저 분야 등에 걸쳐 계획적·주도적으로 자족적인 도시를 개발·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과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 (법 제1조)

■ 대상 공익사업 : 기업도시개발사업 (법 제14조제1항)

- 사업 시행자 :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의 공동시행, 민간기업 등 (법 제10조)
- 수용주체 : 시행자 (법 제14조제1항)
  - ※ 민간시행자의 경우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 취득 필요(법 제14조제3항)

■ 상위 법정 계획 : -

■ 사업인정의제 인허가 등 : 개발계획에 따른 토지세목고시(토지세목이 포함된 개발 계획 고시 또는 개발발계획 승인후 토지세목 별도 고시) (법 제14조제2항, 제11조제4항)

- 공고·고시 : 고시(관보)
- 토지세목여부 : ○
- 인허가권자 : 국토교통부장관

■ 특례

- 재결신청기간 : 개발계획의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(법 제14조제4항)
- 재결 관할 : 중앙토지수용위원회(법 제14조)

■ 목적사업이외의 시행가능사업(법 제13조)

- 경제자유구역사업
- 관광숙박업·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 및 관광지·관광단지 조성사업
-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
-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
- 산업단지개발사업(국가,일반,도시첨단,농공)
- 물류단지개발사업
-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 및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
- 주택사업(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)
- 체육시설 설치·이용사업
- 택지개발사업

- **항만공사사업**
- 대규모점포(대형마트, 백화점, 쇼핑센터, 복합쇼핑몰 등) 개설

## 연번 27 :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(낙동강수계법)

### ■ 목적

낙동강수계의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개선 (법 제1조)

- **대상 공익사업** : (1) 수변생태벨트조성사업 (법 제27조제1항)  
(2) 수질 개선사업 (법 제27조제1항)

- **사업 시행자** : (1) 환경부장관, (2) **광역시장·시장·군수**
- **수용주체** : (1)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(법 제27조제1항)  
(2) 수질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자 (법 제27조제1항)

### ■ 상위 법정 계획

- 수변구역관리 기본계획 (법 제4조의2)
-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(법 제9조)
-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(법 제10조)
-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(법 제11조)

- **사업인정의제 인허가 등** : (1)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고시 (법 제25조제1항, 제4의3조제3항)  
(2)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승인 (법 제25조제1항, 제24조)

- **공고·고시** : (1) **관보 고시** (2) -
- **토지세목여부** : (1) -, (2) -
- **인허가권자** : (1) 환경부장관, (2) 환경부장관

### ■ 특례

- **재결신청기간** :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 (법 제27조제1항)
- **재결 관할** : 중앙토지수용위원회(법 제27조)

- **목적사업이외의 시행가능사업** : -

## 연번 28 : 농어업재해대책법(농어업재해대책법)

### ■ 목적

농업 및 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(災害)를 예방하고 그 사후(事後)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 및 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 (법 제1조)

### ■ 대상 공익사업 : 응급조치 (법 제7조제1항)

- 사업 시행자 : 지방자치단체장
- 수용주체 : 지방자치단체장

### ■ 상위 법정 계획 : -

### ■ 사업인정의제 인허가 등 : 당해 법령상 절차에 의한 자체 수용 (법 제7조제1항)

- 공고·고시 : -
- 토지세목여부 : -
- 인허가권자 : 지방자치단체의 장

### ■ 특례 : -

### ■ 목적사업이외의 시행가능사업 : -

## 연번 29 : 농어촌도로 정비법(농어촌도로정비법)

### ■ 목적

농어촌도로의 개설, 확장 및 포장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와 농수산물의 생산·유통을 향상시켜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 (법 제1조)

### ■ 대상 공익사업 : 농어촌도로 정비공사 (법 제13조제1항)

- 사업 시행자 : **군수 등** (법 제5조)
- 수용주체 : 군수 또는 도로정비 허가를 받은 자 (법 제13조제1항)

### ■ 상위 법정 계획

- 농어촌도로기본계획 (법 제6조)
- 농어촌도로정비계획 (법 제7조)
- 농어촌도로사업계획 (법 제8조)

■ 사업인정의제 인허가 등 : 농어촌 도로의 노선 지정 (법 제13조제2항, 제9조제1항)

- 공고·고시 : 고시(공고)
- 토지세목여부 : -
- 인허가권자 : 군수

■ 특례 : 도로 공사의 시행기간 이내(법 제13조 제2항)

■ 목적사업이외의 시행가능사업 :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 (법 제12조)

연번 30 :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(농어촌리모델링법)

■ 목적

농어촌의 주거환경 및 노후·불량 주택을 계획적·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살기 좋은 농어촌마을을 만드는 데 이바지 (법 제1조)

■ 대상 공익사업 : 농어촌환경 정비사업 (법 제22조제1항)

- 사업 시행자 : 지방자치단체 등 (법 제11조)
- 수용주체 : 정비사업 시행자(법 제21조)

■ 상위 법정 계획

- 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 (법 제5조)
- 농어촌마을 정비계획 (법 제6조)

■ 사업인정의제 인허가 등 : 정비사업의 실시계획 고시 (법 제22조제2항, 제16조제4항)

- 공고·고시 : 고시
- 토지세목여부 : ○
- 인허가권자 : 시장·군수·구청장

※ 실시계획 승인 전(정비계획 고시일 현재)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과 세입자세대수 과반수 동의 필요하나 세입자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등은 세입자 동의절차 제외(제16조제2항)

■ 특례

- 재결신청기간 :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 (법 제22조제3항)
- 재결 관할 : -

■ 목적사업이외의 시행가능사업(법 제17조)

- 도시개발사업
-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
- 주택사업(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)

## ■ 목적

농업생산기반, 농어촌 생활환경,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·체계적으로 정비·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 (법 제1조)

## ■ 대상 공익사업 : 농어촌정비사업 (법 제110조제2항, 제2조 제4호)

- (1)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
- (2)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
- (3) 농어촌산업 육성사업
- (4)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
- (5)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

### ■ 사업 시행자 :

- (1)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: 국가 등(법 제10조)
- (2)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: 시장·군수·구청장 등(법 제56조)
- (3) 농어촌산업 육성사업 : 규정 없음
- (4)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 : 시장·군수·구청장 등(법 제82조, 제83조)
- (5)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 : 시장·군수·구청장 등(법 제96조)

- 수용주체 :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(토지소유자 등 민간인 경우 제외) (법 제110조제1항)

## ■ 상위 법정 계획

-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(법 제4조)
-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(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)
- 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계획 (수산업발전 기본법 제7조)
-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(법 제8조)
- 농어촌생활환경 정비 기본방침 (법 제53조)
- 농어촌생활환경 정비계획 (법 제54조)
-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 기본계획 (법 제58조)
-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시행계획 (법 제60조)
- 농어촌산업 육성 지침 (법 제73조제1항)
-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 (법 제73조제2항)
- 한계농지등의 정비에 관한 기본 방침 (법 91조)
- 농어촌마을 정비계획 (법 제101조)

■ **사업인정의제 인허가 등** : 농어촌정비사업의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고시(법 제110조제2항)

- (1) 기본계획(법 제8조, 고시절차 없음), 시행계획 고시 (법 제9조제7항)
- (2) 기본계획 고시(법 제 58조 제3항), 시행계획 고시(법 제59조제4항)
- (3) 기본계획(법 제73조, 고시절차없음), 시행계획 고시 (법 제74조, 고시절차없음)
- (4) **사업계획 고시(법 제82조)**
- (5) **사업계획 고시는 없으나(법 제96조)** 한계농지 등 정비지구 고시(법 제94조)

■ **광고·고시** : (1) 고시(기본계획은 절차 없음), (2) 고시, (3) -,

■ **토지세목여부** : ○ (법 제110조 제4항)

■ **인허가권자** :

▶ **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**

- 기본계획 : 농림축산식품부장관(수립), **광역시장, 특별자치시장**, 시·도지사(수립; 경지정리,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·보수 및 준설사업의 경우)
- 시행계획 : 농림축산식품부장관(승인), 시도지사(승인)  
※ 시행계획에 대해 토지 등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 2/3 이상의 동의 필요

▶ **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**

- 기본계획 : 시장·군수·구청장(수립)
- 시행계획 : 시장·군수·구청장(수립 또는 승인), 시도지사(승인)
- ▶ **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**: 시장·군수·구청장(수립 또는 승인)
- ▶ **한계농지사업**: 시장·군수·구청장(수립 또는 승인)

■ **특례**

■ **재결신청기간** : 사업 시행기간 (법 제110조제4항)

■ **목적사업이외의 시행가능사업**(법 제106조 제2항)

- 휴양콘도미니엄 사업
-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
- 도시개발사업
- 주택사업(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)
- 청소년수련시설 설치·운영
- 체육시설 설치·이용사업

■ 목적

농업생산기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을 농업생산기반시설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·이용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재원을 마련하고 농어촌 지역발전에 이바지 (법 제1조)

■ 대상 공익사업 :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(농업생산기반 등 활용사업)  
(법 제18조제1항)

■ 사업 시행자 :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(국가 등) (법 제4조제1항, 제2조)

■ 수용주체 : 사업시행자 (법 제18조제1항)

※ 사업대상 토지면적(국·공유지 제외) 의 3분의2 이상 확보(취득 또는 동의), 토지소유자 2분의1 이상 동의 필요(법 제18조제2항)

■ 상위 법정 계획 :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에 대한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활용 사업계획 (법 제4조)

■ 사업인정의제 인허가 등 :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구역(농업생산기반시설 등 활용구역)의 지정·고시 (법 제18조제3항, 제5조제4항)

■ 공고·고시 : 고시

■ 토지세목여부 : -

■ 인허가권자 : 농림축산식품부장관

■ 특례

■ 재결신청기간 :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 (법 제18조제3항)

■ 목적사업이외의 시행가능사업(법 제15조)

• 관광숙박업·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 및 관광지·관광단지 조성사업

•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

•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

• 도시개발사업

• 물류단지개발사업

• 대규모점포 개설(대형마트, 백화점, 쇼핑센터, 복합쇼핑몰 등)

• 체육시설 설치·이용사업

- 주택사업(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)
- **항만공사사업**

## 연번 33 : 대기환경보전법(대기환경보전법)

### ■ 목적

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(危害)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·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 (법 제1조)

### ■ 대상 공익사업 : 측정망 설치 (법 제5조제1항)

- **사업 시행자** : 환경부장관, 시도지사 (법 제5조제1항)
- **수용주체** : 환경부장관, 시도지사 (법 제5조 제1항)

### ■ 상위 법정 계획 : 측정망 설치계획 (법 제4조)

### ■ 사업인정의제 인허가 등 : 사업인정의제 규정 없음

### ■ 특례 : -

### ■ 목적사업이외의 시행가능사업 : -

■ 목적

댐의 건설·관리, 댐건설 비용의 회전활용, 댐건설에 따른 환경대책,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·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 (법 제1조)

■ 대상 공익사업 : 댐건설사업 (법 제11조제1항)

- 사업 시행자 : **환경부장관** 등(법 제3조)
- 수용주체 : 댐건설사업시행자 (법 제11조제1항)

■ 상위 법정 계획 : 댐건설장기계획 (법 제4조)

- 댐건설장기계획 (법 제4조)
- 댐건설기본계획 (법 제7조)
- 댐건설실시계획 (법 제8조)

■ 사업인정의제 인허가 등 : 댐건설 기본계획의 고시 (법 제11조제2항, 제7조제4항)

- 공고·고시 : 고시
- 토지세목여부 : ○
- 인허가권자 : 환경부장관, 시도지사

■ 특례

- 재결신청기간 :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(법 제11조제2항)

■ 목적사업이외의 시행가능사업

-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

■ 목적

도로망의 계획수립, 도로 노선의 지정,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, 도로의 관리·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 (법 제1조)

■ 대상 공익사업 : 도로공사 (법 제82조제1항)

- 사업 시행자 : 도로관리청 등 (법 제31조, 제36조)
- 수용주체 : 도로관리청 (법 제82조제1항)

※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경우 사업시행은 가능하여도 수용권은 없음

■ 상위 법정 계획

-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(법 제5조)
- 도로건설관리계획 (법 제6조)
-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(5년 계획) (법 제8조제1항)
-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세부사업계획(년간 계획) (법 제8조제4항)

■ 사업인정의제 인허가 등 : 도로구역 결정·고시 (법 제82조제2항, 제25조제3항)

- 공고·고시 : 고시
- 토지세목여부 : ○
- 인허가권자 : 도로관리청

■ 특례

■ 재결신청기간 : 도로공사의 시행기간 (법 제82조제2항)

■ 목적사업이외의 시행가능사업 : -

■ 목적

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·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 (법 제1조)

■ 대상 공익사업 : 정비사업 (법제63조, 제2조)

- (1) 주거환경개선사업
- (2) 재개발사업
- (3) 재건축사업

■ 사업 시행자 : (1) 시장, 군수 등 (2) 조합 등 (3) 조합 등

■ 수용주체 : 사업시행자

- 시장·군수 등이 사업자를 지정하거나 민간과 공동 시행할 때 :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소유자등 2/3 이상의 동의, 세입자 과반수동의(제24조 제2항)
- 주택재개발,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원 과반수 동의(제25조제1항)

■ 상위 법정 계획

- 도시·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(법 제3조)
- 도시·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(특별시장등 수립) (법 제4조)

■ 사업인정의제 인허가 등 : 정비사업 시행계획인가의 고시 또는 시장,군수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의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(법 제40조제2항, 법 제28조제4항)

- 공고·고시 : 고시(공보)
- 토지세목여부 : ○
- 인허가권자 : 시장, 군수

※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전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해 토지 등 소유자 동의 필요 (법 제50조 4항 내지 5항)

- 사업시행자가 토지등 소유자 인 경우: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
-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: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)

■ 특례

- 재결신청기간 :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이내 (법 제40조제3항)

■ 목적사업이외의 시행가능사업

- 주택사업(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)

- 공공주택건설사업
- 대규모점포(대형마트, 백화점, 쇼핑센터, 복합쇼핑몰 등) 개설
-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

## 연번 37 : 도시개발법(도시개발법)

### ■ 목적

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(법 제1조)

### ■ 대상 공익사업 : 도시개발사업 (법 제22조제1항)

- 사업 시행자 : 국가·지방자치단체 등 (법 제11조)
- 수용주체 : 시행자 (법 제22조제1항)  
※ 민간시행자의 경우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 소유, 소유자의 2분의1 이상 동의 필요(법제2조제1항)

### ■ 상위 법정 계획 : -

### ■ 사업인정의제 인허가 등 : 개발계획에 따른 토지세목 고시 (법 제22조제1항, 제5조, 제9조제1항)

- 공고·고시 : 고시(공보, 관보)
- 토지세목여부 : ○
- 인허가권자 : 국토교통부장관, 시도지사, 대도시(인구50만이상)시장

### ■ 특례

- 재결신청기간 : 개발계획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종료일 (법 제22조제3항)

### ■ 목적사업이외의 시행가능사업(법 제19조)

- 주택사업(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)
- 항만공사사업
- 관광지·관광단지 조성사업
- 체육시설 설치·이용사업
- 대규모점포(대형마트, 백화점, 쇼핑센터, 복합쇼핑몰 등) 개설
- 물류단지개발사업
- 산업단지개발사업(국가,일반,도시첨단)

■ 목적

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·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 (법 제1조)

■ 대상 공익사업 :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의 단계별 시행에 필요한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(법 제12조제1항)

- 사업 시행자 : 시장, 군수 (법 제12조제1항)
- 수용주체 : 시장·군수 (법 제12조제1항)

■ 상위 법정 계획

-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(법 제5조)
-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(법 제8조)
- 중기계획의 단계적 시행에 필요한 연차별 시행계획 (법 제10조)
- 도시철도망구축계획 (도시철도법 제5조)

■ 사업인정의제 인허가 등 :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의 단계별 시행에 필요한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고시 (법 제12조제3항, 제10조제1항)

- 공고·고시 : 공보 고시
- 토지세목여부 : -
- 인허가권자 : 시장·군수 (시장은 특별시 광역시장,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)

■ 특례

- 재결신청기간 : 시행계획에서 정한 시행기간의 종료일 (법 제12조제3항)

■ 목적사업이외의 시행가능사업 : -

■ 목적

도시교통권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도시철도의 건설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합리화하며 도시철도차량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시교통의 발전과 도시교통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이바지 (법 제1조)

■ 대상 공익사업 : 도시철도건설사업 (법 제10조제1항)

- 사업 시행자 : 도시철도건설자(법 제7조)
- 수용주체 : 도시철도건설자 (법 제10조제1항)

■ 상위 법정 계획

- 도시철도망구축계획 (법 제5조제1항)
- 국가기간교통망계획 (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)
-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(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조)
-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(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)
-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(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)
-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(20년) (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)
-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(5년) (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8조)
- 대중교통기본계획 (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)
-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(법 제6조)

■ 사업인정의제 인허가 등 :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·고시 (법 제10조제2항, 제7조제6항)

- 공고·고시 : 고시(관보)
- 토지세목여부 : -
- 인허가권자 : 국토교통부장관

■ 특례

- 재결신청기간 :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에서 정한 도시철도사업기간의 종료일 (법 제10조제2항)

■ 목적사업이외의 시행가능사업 :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(법 제8조)

■ 목적

광역지방자치단체 중 도의 사무소(이하 “도청“이라 한다)의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청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균형발전에 이바지 (법 제1조)

■ 대상 공익사업 : 도청이전 신도시개발사업 (법 제17조제1항)

- 사업 시행자 :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(법 제12조)
- 수용주체 : 사업시행자 (법 제17조제1항)

■ 상위 법정 계획 : -

■ 사업인정의제 인허가 등 :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·고시 (법 제17조 제2항, 제6조제6항)

- 공고·고시 : 고시(관보)
- 토지세목여부 : ○
- 인허가권자 : 도지사

■ 특례

- 재결신청기간 :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·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(법 제17조제2항)
- 재결 관할 : -

■ 목적사업이외의 시행가능사업(법 제16조)

-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
- 주택사업(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)
- 택지개발사업
- 물류단지개발사업
-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
- 산업단지개발사업(국가,일반,농공)
- 관광숙박업·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 및 관광지·관광단지 조성사업
- 대규모점포(대형마트, 백화점, 쇼핑센터, 복합쇼핑몰 등) 개설
- 체육시설 설치·이용사업

## ■ 목적

동·서·남해안권 및 내륙권을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권 및 국제적 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·문화·관광 등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교류와 국제협력 증대를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 (법 제1조)

## ■ 대상 공익사업 : 개발사업(해안권, 내륙권) (법 제16조제1항)

- 사업 시행자 : 국가 등(법 제11조)
- 수용주체 : 사업시행자 (법 제16조제1항)

※ 민간시행자의 경우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 소유, 소유자의 2분의1 이상 동의 필요

## ■ 상위 법정 계획

- 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(법 제5조)
- 내륙권 발전 종합계획 (법 제5조)

## ■ 사업인정의제 인허가 등 : 개발계획의 고시(토지세목 포함) (법 제16조제2항, 제12조제3항)

- 공고·고시 : 고시
- 토지세목여부 : ○
- 인허가권자 : 국토교통부장관(승인)

## ■ 특례

- 재결신청기간 :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이내 (법 제16조제2항)

## ■ 목적사업이외의 시행가능사업 (법 제15조)

-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
- 택지개발사업
- 관광숙박업·관광객이용시설업·국제회의업 및 관광지·관광단지 조성사업
-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
-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
- 도시개발사업
-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·소규모주택 정비사업
- 어항개발사업
- 물류단지 개발사업

- 주택사업(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)
- 체육시설 설치·이용 사업
- **항만공사사업**
- **산업단지개발사업(국가,일반,도시첨단,농공단지)**
- **해양심층수개발사업**
- 대규모점포(대형마트, 백화점, 쇼핑센터, 복합쇼핑몰 등) 개설

## 연번 42 :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(마리나항만법)

### ■ 목적

마리나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·이용과 마리나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스포츠의 보급 및 진흥을 촉진하고,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 (법 제1조)

### ■ 대상 공익사업 : 마리나항만의 개발사업 (법 제17조제1항)

- **사업 시행자** : 국가 등 (법 제9조)
- **수용주체** : 사업시행자 (법 제17조제1항)
  - ※ 민간시행자의 경우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 소유, 소유자의 2분의1 이상 동의 필요(법제17조제1항)

### ■ 상위 법정 계획

-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 (법 제4조)
-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개발 등에 관한 사업계획 (법 제8조)

### ■ 사업인정의제 인허가 등 : 마리나항만구역의 지정·고시 (법 제17조제2항, 제10조제1항)

- **공고·고시** : 고시
- **토지세목여부** : ○
- **인허가권자** : 해양수산부장관(지정)

### ■ 특례

- **재결신청기간** :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안 (법 제17조제2항)

### ■ 목적사업이외의 시행가능사업 (법 제16조)

-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

- 관광숙박업·관광객이용시설업·국제회의업
-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
-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· 소규모주택 정비사업
- 주택사업(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)
- 택지개발사업
- 항만공사사업

## 연번 43 : 문화재보호법(문화재보호법)

### ■ 목적

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,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 (법 제1조)

### ■ 대상 공익사업 : 문화재 보존·관리 (법 제83조제1항)

- 사업 시행자 : 문화재청장, 지방자치단체장
- 수용주체 : 문화재청장, 지방자치단체장

### ■ 상위 법정 계획

- 문화재기본계획 (법 제6조)
- 문화재보존 시행계획 (법 제7조)

### ■ 사업인정의제 인허가 등 : 사업인정의제 규정 없음

### ■ 특례 : -

### ■ 목적사업이외의 시행가능사업 : -

■ 목적

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·운영하고 물류시설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여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(법 제1조)

- 대상 공익사업 : (1) 물류터미널사업(복합, 일반) (법 제10조제1항)  
(2) 물류단지개발사업 (법 제32조제1항)

- 사업 시행자 : (1) 국가 등 (법 제7조), (2) 국가 등 (법 제27조)
- 수용주체 : (1) 공사시행인가를 받은 자(물류터미널사업자) (법 제10조제1항)  
(2) 시행자 (법 제32조제1항)

※ 물류단지 개발의 경우 민간개발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을 매입하여야 함(법 제32조제1항)

- 상위 법정 계획 : (1) 국가물류 기본계획 (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)  
(2)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 (법 제5조)

■ 사업인정의제 인허가 등 :

- (1) 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공사계획의 공사시행 인가의 고시 (법 제10조제2항, 제9조제4항)
- (2) 물류단지 지정·고시(법 제23조제1항) 또는 개발계획 고시 (법 제32조제2항, 제22조제3항)

- 공고·고시 : (1) 고시, (2) 고시(공보)
- 토지세목여부 : (1) ○, (2) ○
- 인허가권자 :
  - (1) 물류터미널사업
    - 국토교통부장관 (복합물류터미널)
    - 시도지사 (일반물류터미널)
  - (2) 물류단지개발사업
    - 일반물류단지 : 국토교통부장관, 시도지사
    -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 : 국토교통부장관, 시도지사

■ 특례

- 재결신청기간 : (1) 공사시행인가에서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내 (법 제10조제2항)  
(2)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 내 (법 제32조제3항)

■ 목적사업이외의 시행가능사업 (법 제21조, 제30조)

(1) 물류터미널사업(복합, 일반)

-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
- 도시개발사업
- 항만공사사업
- 국제물류주선업(복합물류터미널에만 적용)
- 석유판매업(주유소)
- 식품접객업(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제외)
- 자동차매매업 및 자동차정비업
-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

(2) 물류단지개발사업

-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
- 항만공사사업
- 대규모점포(대형마트, 백화점, 쇼핑센터, 복합쇼핑몰 등) 개설
- 체육시설 설치·이용 사업

**연번 45 :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(민간임대주택법)**

■ 목적

민간임대주택의 건설·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 (법 제1조)

■ 대상 공익사업 : (1)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 (법 제20조제1항)

(2) 기업형임대주택 건설사업 및 촉진지구조성사업 (법 제34조제1항)

■ 사업 시행자 : (1) 임대사업자 (2) 기업형 임대사업자, 공공기관

■ 수용주체 : (1) 임대사업자(법 제20조) (2)시행자 (법 제34조)

※ (1) 임대사업자의 경우 토지면적의 80%이상 매입 필요하며, 토지소유자로부터 매입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경우도 포함(법 제20조제1항)

※ (2) 시행자는 촉진지구 토지면적의 2/3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총수의 1/2이상 동의를 받아야 함(법 제34조제1항)

■ 상위 법정 계획 : -

■ 사업인정의제 인허가 등 :

(1) 토지보상법 제4조 5호의 지정을 받은 임대사업자의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 계획의 승인 (법 제20조제2항)

(2)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·고시 (법 제34조제2항, 제26조제1항)

- **공고·고시** : (1) 고시, (2) 고시(관보, 공보)
- **토지세목여부** : (1) ○, (2) ○
- **인허가권자** :
  -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(10만이상, 10만이하)
  - 시·도지사, 대도시(인구50만이상) 시장, 시장·군수·구청장
  - 공급촉진지구 지정 : 시·도지사 , 국토교통부장관

## ■ 특례

- **재결신청기간** :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 기간 (법 제20조제2항)

## ■ 목적사업이외의 시행가능사업 (법 제29조)

- 관광지·관광단지 조성사업
-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
- 도시개발사업
- 대규모점포(대형마트, 백화점, 쇼핑센터, 복합쇼핑몰 등) 개설
- 체육시설 설치·이용 사업

## 연번 46 : 사방사업법(사방사업법)

## ■ 목적

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산사태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방사업(砂防事業)을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공공이익의 증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 (법 제1조)

## ■ 대상 공익사업 : 사방사업 (법 제10조의2제1항)

- **사업 시행자** :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단체 등(법 제 6조)
- **수용주체** : 시·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 (법 제10조의2제1항)

## ■ 상위 법정 계획

- 사방사업 기본계획 (법 제3조의2)
- **지역사방사업계획 (법 제3조의2)**

■ **사업인정의제 인허가 등** : 사방지 지정·고시 (법 제10조의2제2항, 제4조제1항)

- **공고·고시** : 고시
- **토지세목여부** : ○
- **인허가권자** : 시도지사, 지방산림청장

■ **특례** : -

■ **목적사업이외의 시행가능사업** : -

**연번 47 :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(민간투자법)**

■ **목적**
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·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(법 제1조)

■ **대상 공익사업** : 민간투자사업 (법 제20조제1항)

- **사업 시행자** : 공공부문의외의 자로서 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(법 제2조 제7호)
- **수용주체** : 사업시행자 (법 제20조제1항)

■ **상위 법정 계획**

-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(법 제7조)
-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(법 제10조)

■ **사업인정의제 인허가 등** :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의 고시 (법 제20조제2항, 제15조제2항)

- **공고·고시** : 고시
- **토지세목여부** : ○
- **인허가권자** : 주무관청(해당 사회기반시설업무 관장 행정기관의 장)

■ **특례**

- **재결신청기간** :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(법 제20조제2항)

■ **목적사업이외의 시행가능사업** (법 제21조)

- 주택건설사업
- 택지개발사업
-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
- 도시개발사업
- 정비사업·재개발사업
- 소규모주택정비사업·취약주택정비사업
- 산업단지개발사업
- 관광숙박업·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관광지·관광단지 개발사업
- 물류터미널 사업
- 항만운송사업
- 대규모점포(대형마트, 백화점, 쇼핑센터, 복합쇼핑몰 등), 도매배송서비스 또는 공동집배송센터사업
- 노외주차장 설치·운영 사업
- 체육시설 설치·이용 사업
- 문화시설 설치·운영 사업
- 자연휴양림 조성사업
-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의 설치·운영 사업
-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·운영사업
- 건축물의 설치·운영 사업

## 연번 48 :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(산림복지법)

### ■ 목적

산림복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,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 (법 제1조)

### ■ 대상 공익사업 :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 (법 제42조제1항)

- 사업 시행자 : 국가 등 (법 제32조)
- 수용주체 : 사업시행자 (법 제42조제1항)

### ■ 상위 법정 계획 : 산림복지 진흥계획 (법 제5조)

### ■ 사업인정의제 인허가 등 :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 승인·고시 (법 제42조제2항, 제35조제4항)

- **공고·고시** : 고시
- **토지세목여부** : ○
- **인허가권자** : 산림청장

■ **특례**

- **재결 관할** : 중앙토지수용위원회

■ **목적사업이외의 시행가능사업 (법 제37조)**

-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
- 체육시설 설치·이용 사업

**연번 49 :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(산업입지법)**

■ **목적**

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(법 제1조)

■ **대상 공익사업 :**

- (1) 산업단지개발사업(국가,일반,도시첨단) (법 제22조제1항)
- (2) 산업단지개발사업(농공) (법 제22조제1항)
- (3) 특수지역개발사업 (법 제39조제1항, 제3항)

- **사업 시행자** : (1)(2) 국가 등 (법 제16조), (3) 국토부장관 등(법 제39조제2항),
- **수용주체** : (1)(2) 사업시행자 (법 제22조제1항), (3) 사업시행자(법 제39조제1항, 제22조제1항)  
 ※ (1)(2) 민간시행자는 토지면적의 100분의 50이상 확보(취득 또는 동의) 필요 (법제22조제4항)

■ **상위 법정 계획** : 산업입지수급계획 (법 제5조의2)

■ **사업인정의제 인허가 등 :**

- (1) 국가,일반,도시첨단 산업단지 지정·고시(토지세목 포함되는 경우) 또는 개발계획 고시(단지 지정 후 개발계획에 토지세목을 포함하는 경우) (법 제22조제2항, 제

7의4조제1항)

(2)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·고시(법 제22조제2항, 제19조제1항)

(3) 특수지역개발사업의 지정·고시 (법 제39조제1항, 제3항)

■ **공고·고시** : (1) 고시 (2) 고시 (3) 고시

■ **토지세목여부** : (1) ○, (2) ○, (3) ○

■ **인허가권자** :

(1) (산업단지) 국가, 일반, 도시첨단

- 국토교통부장관, 시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

(2) 농공단지

-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

(3) 국토교통부장관

## ■ 특례

■ **재결신청기간** :

(1)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 (법 제22조제3항)

(2) 농공단지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 (법 제22조제3항)

(3) -

■ **재결 관할** : 중앙토지수용위원회(국가산업단지), 지방토지수용위원회(국토부장관 이외의 자가 지정한 산업단지)

## ■ 목적사업이외의 시행가능사업 (법 제21조)

(1), (2) 산업단지개발사업(국가, 일반, 도시첨단, 농공)

•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

• **항만공사사업**

• 도시개발사업

• 대규모점포(대형마트, 백화점, 쇼핑센터, 복합쇼핑몰 등) 개설

• 체육시설 설치·이용 사업

• 택지개발사업

• 관광지·관광단지 조성사업

(3) 특수지역개발사업

※ 특수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 법 제21조를 준용하고 있음(법 제39조제1항)

## ■ 목적

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·이용 및 보전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(법 제1조)

## ■ 대상 공익사업 : 새만금사업 (법 제18조제1항)

▪ 사업 시행자 : 국가 등 (법 제8조)

▪ 수용주체 : 사업시행자 (법 제18조제1항)

※ 민간시행자는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 토지 매입, 토지소유자 의 2분의 1 이상 동의 필요(법 제18조제1항)

## ■ 상위 법정 계획

• 새만금사업 기본계획 (법 제6조)

• 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(법 제7조)

## ■ 사업인정의제 인허가 등 : 용도별 개발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(법 제18조제2항, 제11조제5항)

▪ 공고·고시 : 고시

▪ 토지세목여부 : ○

▪ 인허가권자 : 새만금청장

## ■ 특례

▪ 재결 관할 : 중앙토지수용위원회

## ■ 목적사업이외의 시행가능사업 법 제17조)

• 관광숙박업·관광객이용시설업·국제회의업 및 관광지·관광단지 조성사업

•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

•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

• 도시개발사업

•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·소규모주택 정비사업

• 물류단지개발사업

• 산업단지개발사업(국가,일반,도시첨단,농공)

• 대규모점포(대형마트, 백화점, 쇼핑센터, 복합쇼핑몰 등) 개설

• 주택사업(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)

- 체육시설 설치·이용 사업
- 택지개발사업
- 항만공사사업
- 연안정비사업

## 연번 51 : 석면안전관리법(석면안전관리법)

### ■ 목적

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(법 제1조)

■ **대상 공익사업** : 실태조사, 조사,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,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 (법 제36조제1항)

- **사업 시행자** : 환경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

### ■ 상위 법정 계획

- 석면관리 기본계획 (법 제5조)
- 석면관리 시행계획(부문별 또는 지역별 세부계획) (법 제6조)

■ **사업인정의제 인허가 등** : 사업인정의제 규정 없음

■ **특례** : -

■ **목적사업이외의 시행가능사업** : -

## 연번 52 : 석탄산업법(석탄산업법)

### ■ 목적

석탄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석탄산업을 건전하게 육성·발전시키고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(需給)의 안정과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며 탄광지역의 진흥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 (법 제1조)

■ **대상 공익사업** : 연료단지 조성사업 (법 제23조제3항)

▪ **사업 시행자** : 시·도지사

■ **상위 법정 계획** : 석탄산업 장기계획 (법 제30조)

■ **사업인정의제 인허가 등** : 사업인정의제 규정 없음

■ **특례** : -

■ **목적사업이외의 시행가능사업** : -

#### 연번 53 : 소규모 공공시설(소규모공공시설법)

#### ■ 목적

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, 그 위험시설의 정비 계획 수립, 긴급 안전조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 (법 제1조)

■ **대상 공익사업** :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(법 제14조제1항)

▪ **사업 시행자** : 관리청 등 (법 제10조, 제12조)

▪ **수용주체** : 관리청 (법 제14조제1항)

※ 관리청이란 특별자치시·도지사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을 말함(법 제2조)

※ 관리청이 아닌 자의 경우 토지수용권 없음

■ **상위 법정 계획** :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(법 제9조)

■ **사업인정의제 인허가 등** :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공고 또는 소규모 공공시설공사의 시행 허가사항 공고 (제14조제2항, 법 제10조제3항, 법 제12조제3항)

▪ **공고·고시** : 고시(공고)

▪ **토지세목여부** : ○

▪ **인허가권자** : 관리청, 특별자치도지사, 특별자치시장, 시장·군수·구청장

#### ■ 특례

▪ **재결신청기간** : 사업의 시행기간 내 (법 제14조제2항)

## ■ 목적사업이외의 시행가능사업 (법 제13조)

-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
- 관광지·관광단지 조성사업(조성계획 의제)

## 연번 54 : 소하천정비법(소하천정비법)

### ■ 목적

소하천(小河川)의 정비·이용·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이바지 (법 제1조)

### ■ 대상 공익사업 : 소하천 정비 (법 제12조제1항)

- 사업 시행자 : 관리청 등(법 제8조, 제10조)
- 수용주체 : 관리청 (법 제12조제1항)

※ 관리청이란 특별자치시·도지사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을 말함(법 제3조)

※ 관리청이 아닌 자의 경우 토지수용권 없음

### ■ 상위 법정 계획

-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(법 제6조)
- 소하천정비 중기계획 (법 제7조)

### ■ 사업인정의제 인허가 등 : 소하천정비 시행계획의 공고 (법 제12조제2항, 제8조제2항)

- 공고·고시 : 공고
- 토지세목여부 : ○
- 인허가권자 : 관리청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

### ■ 특례

- 재결신청기간 : 시행계획의 사업기간 내 (법 제12조제2항)

### ■ 목적사업이외의 시행가능사업 :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 (법 제10조의2)

## 연번 55 :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(수도권신공항법)

### ■ 폐지됨 2016.3 → 공항시설법으로 통폐합(연번 105: 공항시설법)

■ 목적

수도(水道)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·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 (법 제1조)

■ 대상 공익사업 : 수도사업 (법 제60조제1항)

- 사업 시행자 : 수도사업자
- 수용주체 : 수도사업자 (법 제60조제1항)

■ 상위 법정 계획

- 수도정비기본계획(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) (법 제4조제1항)
- 수도정비기본계획(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) (법 제4조제1항)
- 전국수도종합계획 (법 제5조)

■ 사업인정의제 인허가 등 : 일반수도사업의 인가·고시 또는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·고시 (법 제60조제2항, 제17조제1항 및 제3항)

- 공고·고시 : 고시
- 토지세목여부 : ○
- 인허가권자 :
  - 일반수도사업 : 환경부장관, 시도지사, 시장군수
  - 공업용수도사업 : 환경부장관, 시도지사

■ 특례

- 재결신청기간 : 수도공사를 완공할 때까지 (법 제60조제2항)

■ 목적사업이외의 시행가능사업 (법 제46조)

-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
- 산업단지개발사업(국가, 일반, 농공)

**연번 57 : 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(수목원정원법)**

■ 목적

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·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유용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, 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(법 제1조)

■ 대상 공익사업 : 수목원 조성사업 (법 제8조의2제1항)

- 사업 시행자 : 산림청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

■ 상위 법정 계획

- 수목원·정원 진흥기본계획 (법 제6조)
- 국립수목원조성계획 (법 제6조의3)

■ 사업인정의제 인허가 등 : 사업인정의제 규정 없음

■ 특례 : -

■ 목적사업이외의 시행가능사업 : -

**연번 58 : 물환경보전법<sup>1)</sup> (물환경보전법)**

■ 목적

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(危害)를 예방하고 하천·호소(湖沼)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·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 (법 제1조)

■ 대상 공익사업 :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(법 제49조의4제1항)

- 사업 시행자 : 국가, 지방자치단체, 환경공단
- 수용주체 : 시행자 (법 제49조의4제1항)

■ 상위 법정 계획 :-

1) 수질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2017년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됨

■ **사업인정의제 인허가 등** :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(법 제49조의4제3항, 제49조제3항)

- **공고·고시** : 고시
- **토지세목여부** : ○
- **인허가권자** : 환경부장관 (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)

■ **특례**

- **재결신청기간** : 비용부담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시에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내 (법 제49조의4제3항)

■ **목적사업이외의 시행가능사업** : -

**연번 59 : 신항만건설 촉진법(신항만건설촉진법)**

■ **목적**

신항만을 신속하게 건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항만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급증하는 항만 수요에 대비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(법 제1조)

■ **대상 공익사업** : 신항만건설사업 (법 제16조제1항)

- **사업 시행자** : 국가가 지정하는 자(법 제7조)
- **수용주체** : 사업시행자 (법 제16조제1항)

■ **상위 법정 계획** :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(법 제3조)

■ **사업인정의제 인허가 등** :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의 고시 (법 제16조제2항, 제8조)

- **공고·고시** : 고시
- **토지세목여부** : ○
- **인허가권자** : 해양수산부장관 (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)

■ **특례**

- **재결신청기간** :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(법 제16조제3항)
- **재결 관할** : 중앙토지수용위원회(법 제16조제4항)

■ **목적사업이외의 시행가능사업** (법 제9조)

-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
- 철도건설사업
- 물류터미널(복합, 일반) 사업
- 산업단지개발사업(국가, 일반, 도시첨단)
-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
- 관광숙박업·관광객이용시설업·국제회의업
-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
- 전원개발사업
- 체육시설 설치·이용사업

**연번 60 :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(행복도시법)**

■ **목적**

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새롭게 조성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(법 제1조)

■ **대상 공익사업** :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(법 제24조제1항)

- **사업 시행자** : 공공기관(법 제18조)
- **수용주체** : 사업시행자 (법 제24조제1항)

■ **상위 법정 계획**

-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(법 제17조)
-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계획 (법 제16조)
-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(법 제19조)

■ **사업인정의제 인허가 등** :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(예정지역 등)의 지정 및 고시 (법 제24조제2항, 제12조제1항)

- **공고·고시** : 고시(관보)
- **토지세목여부** : ○
- **인허가권자** : 국토교통부장관

■ **특례**

- **재결신청기간** :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시행기간 이내 (법 제24조제2항)
- **재결 관할** : 중앙토지수용위원회(법 제24조제3항)

■ **목적사업이외의 시행가능사업** (법 제22조)

- 관광지·관광단지 조성사업
-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
- 도시개발사업
- 산업단지개발사업(국가,일반)
- 물류단지개발사업
- 주택사업(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)
- 체육시설 설치·이용 사업

**연번 61 : 어촌·어항법(어촌어항법)**

■ **목적**

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어항(漁港)의 지정·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살기 좋은 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 (법 제1조)

■ **대상 공익사업** : 어항개발사업(어항의 육역에 관한 개발사업) (법 제25조의2제1항)

- **사업 시행자** : 지정권자(해양수산부장관 등) 등 (법 제24조)
- **수용주체** : 어항개발사업시행자 (법 제25조의2제1항)
  - ※ 지정권자이외의 사업시행자는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 필요(법제25조의2 제1항)

■ **상위 법정 계획** :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 (법 제4조)

■ **사업인정의제 인허가 등** : 어항개발계획의 수립 고시 (법 제25조의2제2항, 제19조제6항)

- **공고·고시** : 고시
- **토지세목여부** : ○
- **인허가권자** : 해양수산부장관(국가어항), 시도지사(지방어항), 시장·군수·구청장(어촌정주어항 및 마을 공동어항)

## ■ 특례

- **재결신청기간** : 어항개발계획에서 정한 어항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내 (법 제25조의2제3항)

## ■ 목적사업이외의 시행가능사업 :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 (법 제8조)

### 연번 62 :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(어촌특화발전법)

## ■ 목적

어촌의 주민들이 신뢰와 협동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자생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 (법 제1조)

## ■ 대상 공익사업 : 어촌특화사업 (법 제17조제1항)

- **사업 시행자** : 시·군·구청장 등 (법 제12조)
- **수용주체** : 시·군·구청장 또는 어촌특화사업시행자 (법 제17조제1항)

## ■ 상위 법정 계획 : 어촌특화발전계획 (법 제6조)

## ■ 사업인정의제 인허가 등 :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 지정·고시 (법 제17조제2항, 제9조제2항)

- **공고·고시** : 고시(관보, 공고)
- **토지세목여부** : ○
- **인허가권자** : 해양수산부장관, 시도지사

## ■ 특례

- **재결신청기간** : 어촌특화발전계획에서 정하는 어촌특화사업의 시행기간 내 (법 제17조제2항)

## ■ 목적사업이외의 시행가능사업 (법 제16조)

- 휴양콘도미니엄사업
-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
-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
- 주택사업(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)
- 체육시설 설치·이용 사업

■ 목적

역세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역세권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역세권과 인접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 (법 제1조)

■ 대상 공익사업 : 역세권개발사업 (법 제17조제1항)

▪ 사업 시행자 : 국가 등 (법 제12조)

▪ 수용주체 : 사업시행자 (법 제17조제1항)

※ 민간시행자는 재결신청전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 소유, 토지소유자 의 2분의 1 이상 동의 필요(법제17조 제1항)

■ 상위 법정 계획 : -

■ 사업인정의제 인허가 등 :

• 역세권 개발구역의 지정·고시 또는 사업계획의 고시(지정후 사업계획에 토지 세목 포함하는 경우) (법 제17조제2항, 제4조, 제9조)

▪ 공고·고시 : 고시(관보, 공보)

▪ 토지세목여부 : ○

▪ 인허가권자 :

• 국토교통부장관, 특별시장·광역시장 또는 시·도지사,

■ 특례

▪ 재결신청기간 : 해당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내 (법 제17조제2항)

■ 목적사업이외의 시행가능사업 (법 제16조)

- 관광숙박업·관광객이용시설업·국제회의업 및 관광지·관광단지 조성사업
-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
-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
- 도시개발사업
- 물류단지개발사업
- 주택사업(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)
- 택지개발사업
- 체육시설 설치·이용 사업

## ■ 목적

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·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,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,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(법 제1조)

## ■ 대상 공익사업 : 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 (법 제31조제1항)

■ 사업 시행자 : 지방자치단체 등 (법 제26조)

■ 수용주체 : 사업시행자 (법 제31조제1항)

※ 특구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들이 특구 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의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 제외 (법 제31조1항)

## ■ 상위 법정 계획

- 연구개발특구육성종합계획 (법 제6조)
- 연구개발특구개발계획 (법 제6조의2)

## ■ 사업인정의제 인허가 등 :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·고시 (법 제31조제2항, 제28조제1항)

- 공고·고시 : 고시(공보)
- 토지세목여부 : ○
- 인허가권자 : 시·도지사

## ■ 특례

- 재결신청기간 :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 시행기간 이내 (법 제31조제2항)
- 재결 관할 : 중앙토지수용위원회(법 제31조)

## ■ 목적사업이외의 시행가능사업 (법 제29조)

-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
- 체육시설 설치·이용 사업
- 관광지·관광단지 조성사업
-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
- 도시개발사업
- 택지개발사업
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·소규모주택정비사업

- 물류단지개발사업
- 산업단지개발사업(국가,일반,도시첨단)
- 산업단지재생사업

## 연번 65 : 연안관리법(연안관리법)

### ■ 목적

연안(沿岸)의 효율적인 보전·이용 및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안환경을 보전하고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여 연안을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는 것 (법 제1조)

### ■ 대상 공익사업 : 연안정비사업 (법 제27조제1항)

- **사업 시행자** : 국가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정을 받은 자 (법 제24조)
- **수용주체** : 연안정비사업시행자 (법 제27조제1항)
  - ※ 비행정정인 사업시행자는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 매입, 토지소유자 의 2분의 1 이상 동의 필요 (법 제27조제1항)

### ■ 상위 법정 계획

- 연안침식관리구역에 관한 계획(관리계획) (법 제20조의4)

### ■ 사업인정의제 인허가 등 :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에 따른 고시 (법 제27조제3항, 제25조제4항)

- **공고·고시** : 고시(관보, 공보)
- **토지세목여부** : ○
- **인허가권자** : 해양수산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,

### ■ 특례

- **재결신청기간** : 연안정비사업의 시행기간 (법 제27조제3항)

### ■ 목적사업이외의 시행가능사업 :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(법 제26조)

## ■ 목적

영산강·섬진강 및 탐진강 수계(水系)의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수자원(水資源)과 오염원(汚染源)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해당 수계의 수질을 개선하는 것 (법 제1조)

## ■ 대상 공익사업 :

(1) 수변생태벨트조성사업 (법 제25조제1항)

(2) 수질 :개선사업 (법 제25조제1항)

■ 사업 시행자 : (1) 환경부장관, (2) 시장, 군수

■ 수용주체 : (1)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(법 제25조제1항)

(2) 수질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자 (법 제25조제1항)

## ■ 상위 법정 계획

• 수변구역관리 기본계획 (법 제4조의2)

•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(법 제9조)

•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(법 제10조)

•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(법 제11조)

■ 사업인정의제 인허가 등 : (1)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고시(법 제25조제1항, 제4조의3)

(2)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승인(법 제25조제1항, 제24조)

■ 공고·고시 : (1) 고시, (2) -

■ 토지세목여부 : (1) -, (2) -

■ 인허가권자 : (1) 환경부장관, (2) 환경부장관

## ■ 특례

■ 재결신청기간 : (1)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 (법 제25조제1항)

(2)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 (법 제25조제1항)

■ 재결 관할 : 중앙토지수용위원회(법 제25조제3항)

■ 목적사업이외의 시행가능사업 : -

■ 목적

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·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함 (법 제1조)

■ 대상 공익사업 : 온천개발사업 (법 제10의4조제1항)

- 사업 시행자 : 시장, 군수
- 수용주체 : 시장·군수 (법 제10조의4제1항)

■ 상위 법정 계획 : 온천개발계획 (법 제10조제1항)

■ 사업인정의제 인허가 등 : 온천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을 위한 수용 등의 대상이 되는 토지세목의 고시 (법 제10조의4)

- 공고·고시 : 고시
- 토지세목여부 : ○
- 인허가권자 : 시·도지사

■ 특례

- 재결신청기간 : 개발사업 시행기간 (법 제10조의4제2항)

■ 목적사업이외의 시행가능사업 (법 제10조의2)

-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
- 관광숙박업·관광객이용시설업·국제회의업 및 관광지·관광단지 조성사업
-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
- 주택사업(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)
- 체육시설 설치·이용 사업
- 택지개발사업

■ 목적

「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」 및 「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」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에 반환되는 미합중국군대의 용산부지 등을 활용하여 국가의 책임하에 공원 등을 조성·관리하고 그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 (법 제1조)

■ 대상 공익사업 : 용산공원 조성사업 (법 제51조제1항)

- 사업 시행자 : 공기업 (법 제15조)
- 수용주체 : 공원조성사업 시행자(법 제50조)

■ 상위 법정 계획 :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(법 제13조)

■ 사업인정의제 인허가 등 : 용산공원조성지구에 관한 조성계획(용산공원조성계획)의 고시 (법 제51조제2항, 제14조제5항)

- 공고·고시 : 고시
- 토지세목여부 : ○
- 인허가권자 : 국토교통부장관

■ 특례

- 재결신청기간 :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이내 (법 제51조제2항)
- 재결 관할 : 중앙토지수용위원회(법 제51조제3항)

■ 목적사업이외의 시행가능사업 (법 제17조)

-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
- 체육시설 설치·이용 사업

■ 목적

자동차의 등록, 안전기준, 자기인증, 제작결함 시정, 점검, 정비, 검사 및 자동차 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 (법 제1조)

■ 대상 공익사업 :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 (법 제68조의12)

- 사업 시행자 : 국가 등 (법 제68조의11)
- 수용주체 : 국가 등 공공기관, 공공기관과의 공동출자법인(법제68조의12)

■ 상위 법정 계획 :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 (법 제68조의9)

■ 사업인정의제 인허가 등 : 사업절차는 도시개발법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나 사업인정의제에 관한 준용사항은 없음(법 제68조의10)

■ 목적사업이외의 시행가능사업 (법 제68조의13)

※ 도시개발법상 구역 지정(복합단지 지정) 개발계획, 실시계획 등을 준용하면서 도시개발법상의 의제사항을 적용토록 하고 있음(도시개발법 제 19조)

-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
- 주택사업(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)
- 관광지·관광단지 조성사업
- 체육시설 설치·이용 사업
- 대규모점포(대형마트, 백화점, 쇼핑센터, 복합쇼핑몰 등) 개설
- 물류단지개발사업
- 산업단지개발사업(국가,일반,도시첨단)
- 향만공사사업

■ 목적

자연공원의 지정·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 (법 제1조)

■ 대상 공익사업 : 공원사업 (법 제22조제1항)

- 사업 시행자 : **공원관리청,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자 (법 제20조)**
- 수용주체 : **공원관리청 (법 제22조제1항)**

■ 상위 법정 계획

- **공원기본계획 (법 제11조)**
- **국립공원계획 (법 제12조)**
- **도립공원계획 (법 제13조)**
- **군립공원계획 (법 제14조)**
- **국립공원 보전관리계획 (법 제17조의3)**
- **도립공원 보전관리계획 (법 제17조의3)**
- **군립공원 보전관리계획 (법 제17조의3)**

■ 사업인정의제 인허가 등 : 공원사업의 시행계획 결정·고시 (법 제22조제2항, 제19조제2항)

- **공고·고시** : 고시
- **토지세목여부** : -
- **인허가권자** : **공원관리청, 환경부장관, 시·군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**

■ 특례

- **재결신청기간** : **공원사업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 (법 제22조제2항)**

■ 목적사업이외의 시행가능사업 : -

■ 목적

태풍,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(基幹施設)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·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(법 제1조)

■ 대상 공익사업 :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(법 제14조의3제1항)

- 사업 시행자 : 시장, 군수, 구청장 (법 제14조의2)
- 수용주체 : 시장·군수·구청장 (법 제14조의3제1항)

■ 상위 법정 계획 :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 (법 제3조)

■ 사업인정의제 인허가 등 :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실시계획 공고 (법 제14조의3제2항, 제14조의2제1항)

- 공고·고시 : 고시
- 토지세목여부 : ○
- 인허가권자 : 시장·군수·구청장

■ 특례

- 재결신청기간 :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내 (법 제14조의3제2항)
- 재결 관할 : -

■ 목적사업이외의 시행가능사업 (법 제14조의2)

-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
- 관광지 조성사업
- 산업단지개발사업(국가,일반,농공)
- 주택사업(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)
- 어항개발사업
- 체육시설 설치·이용 사업
- 항만공사사업

■ 목적

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,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·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,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 (법 제1조)

■ 대상 공익사업 : 자연환경보전·이용시설 설치 (법 제52조제1항)

- 사업 시행자 : 국가, 지방자치단체 (법 제38조)
- 수용주체 :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(법 제52조제1항)

■ 상위 법정 계획

- 자연환경보전 기본 방침 (법 제6조)
-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 (법 제9조)
- 생태·경관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 (법 제14조)

■ 사업인정의제 인허가 등 : 자연환경보전·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의 결정·고시 (법 제52조제3항, 제38조제2항)

- 공고·고시 : 고시
- 토지세목여부 : -
- 인허가권자 :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

■ 특례 : -

■ 목적사업이외의 시행가능사업 : -

■ 목적

재해의 근원적 예방과 항구적 복구 등을 위하여 재해위험지구의 개선에 필요한 재해방지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함 (법 제1조)

■ 대상 공익사업 : 재해위험 개선사업 (법 제18조제1항)

- 사업 시행자 : 지방자치단체 등 (법 제8조)
- 수용주체 : 사업시행자 (법 제18조제1항)

■ 상위 법정 계획 : 재해위험개선 사업계획 (법 제9조)

■ 사업인정의제 인허가 등 : 재해위험개선사업 시행계획 승인·고시 (법 제18조제3항, 제10조제4항)

- 공고·고시 : 고시
- 토지세목여부 : ○
- 인허가권자 : 행정안전부장관, 시·도지사

■ 특례

- 재결신청기간 : 개선사업의 시행기간 종료일 (법 제18조제3항)

■ 목적사업이외의 시행가능사업 (법 제17조, 제22조)

-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
- 관광지·관광단지 조성사업
-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
-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
- 물류단지 개발사업
- 대규모점포(대형마트, 백화점, 쇼핑센터, 복합쇼핑몰 등) 개설
- 주택사업(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)
- 체육시설 설치·이용 사업
-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
- 항만공사사업

■ 목적

저수지·댐의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농경지 등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수지·댐의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점검·정비 및 재해발생 시 대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수지·댐의 효과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 (법 제1조)

■ 대상 공익사업 : 저수지·댐의 안전점검, 정밀안전진단, 정비계획수립, 정비사업 (법 제20조제1항)

- 사업 시행자 : 시장·군수·구청장
- 수용주체 : 저수지·댐 관리자 (법 제20조제1항)

■ 상위 법정 계획 : 위험저수지·댐 정비기본계획 (법 제12조)

■ 사업인정의제 인허가 등 : 위험저수지·댐 정비기본계획의 고시 (법 제20조제2항, 제12조제1항)

- 공고·고시 : 고시
- 토지세목여부 : ○
- 인허가권자 : 행정안전부장관

■ 특례

- 재결신청기간 :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 (법 제20조제2항)

■ 목적사업이외의 시행가능사업 (법 제21조)

-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
- 어항개발사업
- 주택사업(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)
- 항만공사사업

## 연번 75 : 전기사업법(전기사업법)

### ■ 목적

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(법 제1조)

### ■ 대상 공익사업 : 전기사업용전기설비설치,실지조사,측량및시공,전기사업용전기설비유지·보수 (법 제87조제1항)

- 사업 시행자 : 전기 사업자(일시사용) (법 제87조제1항)

### ■ 상위 법정 계획 : -

### ■ 사업인정의제 인허가 등 : 사업인정의제 규정 없음

### ■ 특례 : -

### ■ 목적사업이외의 시행가능사업 : -

## 연번 76 : 전기통신사업법(전기통신사업법)

### ■ 목적

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(법 제1조)

### ■ 대상 공익사업 : 선로등에 관한 측량, 전기통신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보전공사 (법 제72조제1항)

- 사업 시행자 : 기간통신사업자(일시 사용) (법 제72조제1항)  
※ 일시사용의 경우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와 협의 필요 (법 제72조제1항)

### ■ 상위 법정 계획 : -

### ■ 사업인정의제 인허가 등 : 사업인정의제 규정 없음

### ■ 특례 : -

### ■ 목적사업이외의 시행가능사업 : -

■ 목적

전원개발사업(電源開發事業)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,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(법 제1조)

■ 대상 공익사업 : 전원개발사업 (법 제6조의2제1항)

- 사업 시행자 : 전원개발사업자
- 수용주체 : 전원개발사업자 (법 제6조의2제1항)

■ 상위 법정 계획 : -

■ 사업인정의제 인허가 등 :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·고시 (법 제5조, 제6조의2제3항, 제11조제2항)

- 공고·고시 : 고시(관보)
- 토지세목여부 : ○
- 인허가권자 : 산업통상자원부장관

■ 특례

- 재결신청기간 : 전원개발사업 시행기간 (법 제6조의2제4항)
- 재결 관할 : 중앙토지수용위원회(법 제6조의2제4항)

■ 목적사업 이외의 시행가능사업 :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 (법 제6조)

## ■ 목적

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주민의 복지향상을 지원하며,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·관리를 통하여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 (법 제1조)

## ■ 대상 공익사업 : 접경지역지원사업 (법 제15조제1항)

■ 사업 시행자 : 국가 등 (법 제12조)

■ 수용주체 : 사업시행자 (법 제15조제1항)

※ 민간시행자는 토지면적의 3분의2 이상 토지 매입,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 필요(법 제15조)

## ■ 상위 법정 계획

-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 (법 제5조)
- 접경지역 등 자연환경 보전대책 (법 제7조)
- 접경지역 등 산림관리대책 (법 제7조제4항)
-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 (법 제8조)

## ■ 사업인정의제 인허가 등 :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시행 계획이 고시된 경우의 토지세목의 고시 (법 제15조제2항, 제13조제6항 및 제9항)

■ 공고·고시 : 고시

■ 토지세목여부 : ○

■ 인허가권자 :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

## ■ 특례

■ 재결신청기간 :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이내 (법 제15조제2항)

■ 재결 관할 : 중앙토지수용위원회(법 제15조제3항)

## ■ 목적사업이외의 시행가능사업 (법 제14조)

- 체육시설 설치·이용 사업
-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
- **관광지 조성사업**
- 도시개발사업
- 택지개발사업
-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, 관광농원개발사업,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
- **항만공사사업**

- 물류단지 개발사업
-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· 소규모 주택정비사업

## 연번 79 :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(제주특별법)

### ■ 목적

중전의 제주도의 지역적·역사적·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,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,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 (법 제1조)

### ■ 대상 공익사업 :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 (법 제151조제1항)

- 사업 시행자 : 개발센터 등 (법 제151조)
- 수용주체 : 사업시행자 (법 제151조제1항)
  - ※ 사업시행자는 국·공유지를 제외한 토지의 3분의 2이상 소유,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의 동의(제151조).

### ■ 상위 법정 계획

-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(법 제140조)
- 국제자유도시 광역시설계획 (법 제142조)
- 국제자유도시 민자유치추진계획 (법 제143조)

### ■ 사업인정의제 인허가 등 :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 승인·고시 (법 제151조제2항, 제147조제13항)

- 공고·고시 : 고시(도조례)
- 토지세목여부 : -
- 인허가권자 : 도지사(제주도지사)

### ■ 특례

- 재결신청기간 :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(법 제151조제2항)

### ■ 목적사업이외의 시행가능사업 (법 제148조)

- 관광숙박업·관광객이용시설업·국제회의업 및 관광지·관광단지 조성사업
-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
-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, 관광농원 개발사업, 농어촌민박사업
- 도시개발사업
-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·소규모 주택 정비사업
- 물류단지 개발사업

- 농공단지 개발사업
- 온천개발사업
- 체육시설 설치·이용 사업
- 택지개발사업
- 항만공사사업

## 연번 80 : 주택법(주택법)

### ■ 목적

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·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 (법 제1조)

### ■ 대상 공익사업 : (1) 국민주택건설사업 (법 제24조제2항)

(2)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 (법 제24조제2항)

- 사업 시행자 : 국가·지방자치단체, 한국토지주택공사, 지방공사 등 (법 제4조)
- 수용주체 : 사업주체(국가, 지방자치단체,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)(법 제24조제2항)

### ■ 상위 법정 계획 : -

### ■ 사업인정의제 인허가 등 : 국민주택건설 또는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 사업 계획 승인 (법 제15조, 제27조제2항)

- 공고·고시 : 고시
- 토지세목여부 : -
- 인허가권자 : (1) 시도지사, 대도시(인구 50만이상)시장  
(2)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

### ■ 특례

- 재결신청기간 :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 기간 이내 (법 제27조제2항)

### ■ 목적사업이외의 시행가능사업 (법 제19조)

-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
- 도시개발사업
- 연안정비사업
- 대규모점포(대형마트, 백화점, 쇼핑센터, 복합쇼핑몰 등) 개설

## ■ 목적

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,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(법 제1조)

- **대상 공익사업** : (1)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 (법 제7조, 제9조)  
(2) **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사업** (법 제21조)

- **사업 시행자** :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(법 제10조)
- **수용주체** : (1) 사업시행자 (법 제31조제1항)  
(2) 사업시행자 (법 제31조제1항)

## ■ 상위 법정 계획

- 공여구역주변지역등 발전 종합계획 (법 제7조)
-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 (법 제9조)

## ■ 사업인정의제 인허가 등 :

- (1)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 시행 승인 (법 제31조제5항, 제11조제1항)
- (2)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 승인 (법 제31조제5항, 제21조제1항)
- **공고·고시** : (1) 고시, (2) 고시(관보)
- **토지세목여부** : (1) ○, (2) ○
- **인허가권자** : (1) 시장·군수·구청장, (2) 국토교통부장관

## ■ 특례

- **재결신청기간** :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 이내 (법 제31조제5항)
- **재결 관할** : 중앙토지수용위원회(법 제31조)

## ■ 목적사업이외의 시행가능사업 (법 제29)

- (1) **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**
  - **도시·군계획시설사업**
  - 도시개발사업
  - 택지개발사업
  - 산업단지 개발사업(국가,일반,도시첨단)
  - 물류단지 개발사업

-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
- 체육시설 설치·이용 사업
- 농어촌휴양지개발사업

**(2)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사업 (법 제22조)**

- 도시개발사업(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 수립)
- 택지개발사업(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)
- 산업단지 개발사업(단지 지정)
- 물류단지 개발사업(단지 지정)
- 관광지 조성사업(관광지 지정 등)

**연번 82 :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(미군이전평택지원법)**

**■ 목적**

주한미군지위협정,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 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연합 토지관리 계획협정에 근거하여 주한미군의 기지이전을 위한 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, 주한미군의 기지가 이전 되는 평택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하며, 이전 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(법 제1조)

**■ 대상 공익사업 :**

- (1) 평택시 지역개발계획에 따른 연차별개발사계획에 의한 사업(평택시개발사업) (법 제24조의2제1항)
- (2)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(법 제24조의2제1항)

■ 사업 시행자 : 국가 등 (법 제16조)

- 수용주체 : (1) 평택시개발사업 시행자 (법 제24조의2제1항)
- (2)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 시행자 (법 제24조의2제1항)

**■ 상위 법정 계획**

- (1) 평택시 발전 촉진을 위한 지역개발계획 (법 제14조)
- (2) 평택시 지역개발계획의 연차별 개발계획 (법 제15조)
- (3)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 (법 제23조)

**■ 사업인정의제 인허가 등 :**

- (1) 평택시 지역개발계획에 따른 연차별개발계획의 승인 (법 제24조의2제2항, 제15조제1항)
- (2) 국제화계획지구개발계획의 승인·고시 (법 제24조의2제2항, 제23조제1항)

■ 공고·고시 : (1) -, (2) 고시

■ 토지세목여부 : (1) -, (2) ○

- **인허가권자** : (1) 행정자치부장관, (2) 국토교통부장관.

## ■ 특례

### ▪ 재결신청기간 :

- (1) 연차별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 내 (법 제24조의2제2항)
- (2)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 내 (법 제24조의2제2항)

## ■ 목적사업이외의 시행가능사업 (법 제18조)

- 체육시설 설치·이용 사업
-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
- 택지개발사업

## 연번 83 :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(중소기업진흥법)

## ■ 목적

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기반을 확충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 (법 제1조)

## ■ 대상 공익사업 : 협동화실천계획 시행을 위한 단지조성사업 (법 제33조제1항)

- **사업 시행자** :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,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(중소기업자) (법 제31조)
- **수용주체** :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(법 제33조제1항)

## ■ 상위 법정 계획

- 구조고도화지원계획 (법 제3조)
- 협동화실천계획(단지조성사업이 포함되는 경우) (법 제29조)

## ■ 사업인정의제 인허가 등 : 협동화 실천계획 시행을 위한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(법 제33조제2항)

- **공고·고시** : 고시
- **토지세목여부** : ○
- **인허가권자** : 시·도지사

## ■ 특례 : -

## ■ 목적사업이외의 시행가능사업 (법 제81조)

-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

■ 목적

지능형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여 지능형 로봇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·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에 이바지 (법 제1조)

■ 대상 공익사업 : 로봇랜드의 조성에 따른 공익시설 조성사업 (법 제38조제1항)

▪ 사업 시행자 : 시·도지사, 공공기관 (법 제31조)

■ 상위 법정 계획 :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기본계획 (법 제5조)

■ 사업인정의제 인허가 등 : 사업인정의제 규정 없음

■ 특례 : -

■ 목적사업이외의 시행가능사업 : -

■ 목적

지방소도읍(地方小都邑)을 주변 농어촌의 중심 거점지역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생활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 (법 제1조)

■ 대상 공익사업 :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에 따른 사업(개발사업) (법 제10조제1항)

- 사업 시행자 :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지방공사, 민간개발사업자 (법 제7조)
- 수용주체 : 사업시행자(법 제10조제1항)
  - ※ 민간개발사업자인 경우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매입, 토지소유자 및 건물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등의 필요(법 제10조제1항)

■ 상위 법정 계획

- 지방소도읍지역 종합육성계획 (법 제4조)
- 종합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

■ 사업인정의제 인허가 등 : 종합육성계획에 따른 사업(개발사업) 승인의 고시 (법 제10조제2항, 제8조제4항)

- 공고·고시 : 고시
- 토지세목여부 : ○
- 인허가권자 : 시장·군수(승인)

■ 특례 : -

■ 목적사업이외의 시행가능사업 (법 제9조)

-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
- 체육시설 설치·이용 사업
- 관광지·관광단지 조성사업
- 택지개발사업
-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
- 물류단지 개발사업
- 주택사업(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)
- 산업단지개발사업(국가, 일반, 도시첨단, 농공)

## ■ 목적

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고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종합적·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 (법 제1조)

## ■ 대상 공익사업 : 지역개발사업 (법 제27조제1항)

■ 사업 시행자 : 국가 등 (법 제19조)

■ 수용주체 : 시행자 (법 제27조제1항)

※ 민간시행자는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매입, 토지소유자 및 건물소유자 총수의 각 2분의 1 이상 동의 필요(법제27조제2항)

## ■ 상위 법정 계획

- 국토종합계획
-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(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)
- 수도권정비계획 (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)
- 지역개발계획(시도지사 수립) (법 제7조)
- 지역개발계획(국토부장관 수립) (법 제7조)

## ■ 사업인정의제 인허가 등 :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·고시 (법 제27조제4항, 제11조제1항)

- 공고·고시 : 관보 또는 공보 고시
- 토지세목여부 : ○
- 인허가권자 :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

## ■ 특례

- 재결신청기간 : 실시계획에서 정한 지역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이내 (법 제27조제4항)

## ■ 목적사업이외의 시행가능사업 (법 제24조)

- 관광숙박업·관광객이용시설업·국제회의업 및 관광지·관광단지 조성사업
-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
-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
- 관광농원 개발사업
- 도시개발사업

-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
- 물류단지개발사업
- 산업단지개발사업(국가,일반,도시첨단,농공)
- 어항개발사업
- 온천개발사업
- 대규모점포(대형마트, 백화점, 쇼핑센터, 복합쇼핑몰 등) 개설
- 주택사업(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)
- 체육시설 설치·이용 사업
- 택지개발사업
- 해양심층수 개발·제조

**연번 87 :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(지역특구법)**

■ 목적

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 (법 제1조)

■ 대상 공익사업 : 특화사업 (법 제59조)

■ 사업 시행자 : 특화사업자 (법 제8조)

※ 지자체 이외의 사업자는 재결신청전 국·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,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 필요(법 제59조제2항)

■ 상위 법정 계획 : 지역특화발전 특구계획 (법 제5조)

■ 사업인정의제 인허가 등 : 사업인정의제 규정 없음

■ 특례

- 재결신청기간 : -
- 재결 관할 : -

■ 목적사업이외의 시행가능사업 (법 제65조)

-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

-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
- 관광지·관광단지 조성사업
- 농공단지개발사업
- 체육시설 설치·이용 사업

## 연번 88 : 지하수법(지하수법)

### ■ 목적

지하수의 적절한 개발·이용과 효율적인 보전·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절한 지하수개발·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(법 제1조)

### ■ 대상 공익사업 : 지하수관측시설 및 수질측정망의 설치(법 제18조의2 제1항)

- 사업 시행자 : **환경부장관** 등

### ■ 상위 법정 계획

- 지하수관리 기본계획 (법 제6조)
- 지역지하수 관리계획 (법 제6조의2)

### ■ 사업인정의제 인허가 등 : 사업인정의제 규정 없음

### ■ 특례 : -

### ■ 목적사업이외의 시행가능사업 : -

## 연번 89 : 집단에너지사업법(집단에너지사업법)

### ■ 목적

집단에너지공급을 확대하고, 집단에너지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며,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·운영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「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」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이바지 (법 제1조)

### ■ 대상 공익사업 : 공급시설의 설치, 공급시설 설치를 위한 실지조사·측량 및 시공, 공급시설의 유지·보수 (법 제46조제1항)

- 사업 시행자 :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(법 제9조)

■ 상위 법정 계획 :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 (법 제3조)

■ 사업인정의제 인허가 등 : 사업인정의제 규정 없음

■ 특례 : -

■ 목적사업이외의 시행가능사업 :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 (법 제49조)

## 연번 90 :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

### ■ 목적

철도망의 신속한 확충과 철도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 (법 제1조)

■ 대상 공익사업 : 철도건설사업 (법 제12조제1항)

- 사업 시행자 :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철도시설공단 (법 제8조)
- 수용주체 : 사업시행자 (법 제12조제1항)

### ■ 상위 법정 계획

- 국가철도망구축계획 (법 제4조)
- 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 (법 제7조)

■ 사업인정의제 인허가 등 :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·고시 (법 제12조제2항, 제9조제4항)

- 공고·고시 : 고시
- 토지세목여부 : ○
- 인허가권자 : 국토교통부장관

### ■ 특례

- 재결신청기간 :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이내 (법 제12조제2항)

■ 목적사업이외의 시행가능사업 :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 (법 제11조)

■ 목적

「청소년기본법」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(법 제1조)

■ 대상 공익사업 :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또는 조성계획 시행(법 제47조, 제48조)

- 사업 시행자 :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

■ 상위 법정 계획 : -

■ 사업인정의제 인허가 등 : 사업인정의제 규정 없음

- 공고·고시 : -
- 토지세목여부 : ○ (영 제31조)
- 인허가권자 : -

■ 특례 : -

■ 목적사업이외의 시행가능사업 :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 (법 제33조, 제52조)

■ 목적

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·이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, 그에 따른 이익을 하천의 정비 및 관리 등에 활용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 (법 제1조)

■ 대상 공익사업 : 친수구역조성사업 (법 제19조제1항)

- 사업 시행자 : 국가 등 (법 제12조)
- 수용주체 : 사업시행자 (법 제19조제1항)

■ 상위 법정 계획 : 친수구역조성 사업계획 (법 제4조)

■ 사업인정의제 인허가 등 : 친수구역 지정·고시 또는 사업계획 고시 (법 제19조제2항, 제8조제1항)

- 공고·고시 : 고시(관보)
- 토지세목여부 : ○
- 인허가권자 : **환경부장관**

■ 특례

- 재결신청기간 :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시행기간 내 (법 제19조제3항)
- 재결 관할 : 중앙토지수용위원회(법 제19조제4항)

■ 목적사업이외의 시행가능사업 (법 제15조)

-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
- 관광숙박업·관광객이용시설업·국제회의업 및 관광지·관광단지 조성사업
- 도시개발사업
-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
- 산업단지개발사업(**국가,일반,도시첨단**)
- 대규모점포(대형마트, 백화점, 쇼핑센터, 복합쇼핑몰 등) 개설
- 주택사업(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)
- **체육시설 설치·이용 사업**
- 택지개발사업

■ 목적

우리 민족 고유 무도인 태권도를 진흥하고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인 태권도공원을 조성하여 국민의 심신단련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태권도를 세계적인 무도 및 스포츠로 발전시켜 국위선양에 이바지 (법 제1조)

■ 대상 공익사업 :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(법 제14조제1항)

- 사업 시행자 : 진흥재단 등 (법 제10조)
- 수용주체 :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자 (법 제14조제1항)

■ 상위 법정 계획

- 태권도진흥기본계획 (법 제5조)
- 태권도공원조성 기본계획(도지사 등 수립) (법 제5조)
- 태권도공원조성 기본계획(민간 수립) (법 제5조)

■ 사업인정의제 인허가 등 : 태권도공원조성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의 고시 (법 제14조제2항, 제11조제5항)

- 공고·고시 : 고시(관보)
- 토지세목여부 : ○
- 인허가권자 :
  - 문화체육관광부장관(태권도진흥재단과 지자체장(전라북도지사 또는 무주군수)가 기본계획 수립)
  - 전라북도지사(민간사업자 시행)

■ 특례

- 재결신청기간 : 공원조성사업의 시행기간 이내 (법 제14조제3항)
- 재결 관할 : 중앙토지수용위원회(법 제14조제4항)

■ 목적사업이외의 시행가능사업 (법 제15조)

-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
- 도시개발사업
- 관광숙박업·관광객이용시설업·국제회의업 및 관광지·관광단지 조성사업
- 주택사업(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)
- 지역개발사업

## ■ 목적

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(住宅難)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(宅地)의 취득·개발·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 (법 제1조)

## ■ 대상 공익사업 : 택지개발사업 (법 제12조제1항)

- **사업 시행자** : 국가 등 (법 제7조)
- **수용주체** : 시행자(공동사업시행의 경우 공공시행자와 공동출자법인) (법 제12제1항)

## ■ 상위 법정 계획

- 택지수급계획(주거종합계획중 주거·택지의 수요·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) (주거기본법 제5조)
- 주거종합계획(10년계획) (주거기본법 제5조)
- 주거종합계획(연도별계획) (주거기본법 제5조)

## ■ 사업인정의제 인허가 등 : 택지개발지구의 지정·고시 (법 제12조제2항, 제3조제6항)

- **공고·고시** : 고시(관보)
- **토지세목여부** : ○
- **인허가권자** :
  - 국토교통부장관
  - 시도지사(특별시장, 광역시장·도지사, 특별자치도지사)

## ■ 특례

- **재결신청기간** :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 (법 제12조제2항)
- **재결 관할** : 중앙토지수용위원회(법 제12조제3항)

## ■ 목적사업이외의 시행가능사업 (법 제11조)

-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
- 도시개발사업
- 주택사업(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)
- 산업단지개발사업(국가,일반)

■ 목적

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(危害)를 예방하고,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·보전함으로써 토양생태계를 보전하고, 자원으로서의 토양가치를 높이며,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 (법 제1조)

■ 대상 공익사업 : 국유재산 등의 토양정화 (법 제7조제1항)

- 사업 시행자 : 환경부장관
- 수용주체 : 환경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·군·구청장 (법 제7조제1항)

■ 상위 법정 계획

- 토양보전기본계획 (법 제4조)
- 지역토양보전계획 (법 제4조제4항)

■ 사업인정의제 인허가 등 : 국유재산 등에 대한 토양정화계획의 고시 (법 제7조제2항, 제6조의3제3항)

- 공고·고시 : 고시
- 토지세목여부 : ○ (법 제6조의3제3항)
- 인허가권자 : 환경부장관(수립)

■ 특례

- 재결신청기간 : 토양정화계획에서 정하는 토양정화 기간 내 (법 제7조제2항)

■ 목적사업이외의 시행가능사업 : -

■ 목적

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(敷地) 확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(법 제1조)

■ 대상 공익사업 :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, 이주대책 (법 제14조제1항)

- 사업 시행자 :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,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의 장
- 수용주체 :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(법 제14조제1항)

■ 상위 법정 계획

-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(폐기물관리법 제9조)
-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(도 종합계획 또는 시군종합계획, 광역개발계획, 도시·군 기본계획에 반영) (법 제3조)

■ 사업인정의제 인허가 등 :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·고시(입지지번 포함)  
(법 제14조제2항, 제10조제1항)

- 공고·고시 : 고시
- 토지세목여부 : ○
- 인허가권자 : 환경부장관, 지방자치단체의 장,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

■ 특례

- 재결신청기간 :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가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 (법 제14조제2항)

■ 목적사업이외의 시행가능사업 (법 제12조)

-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

■ 목적

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함 (법 제1조)

■ 대상 공익사업 : 공공하수도 설치 (법 제10조제1항)

- 사업 시행자 :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허가를 받은 자 (법 제16조)
- 수용주체 :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(법 제10조제1항)

■ 상위 법정 계획

- 국가하수도 종합계획 (법 제4조)
- 유역하수도정비계획(권역별 하수도의 설치 및 통합 운영·관리에 관한 계획) (법 제4조의2)
-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(법 제5조)

■ 사업인정의제 인허가 등 :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관한 고시, 공공하수도의 설치 인가 및 고시 또는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 시행 허가 및 고시 (법 제10조제2항, 제11조제2항, 제11조제7항, 법 제16조제2항)

- 공고·고시 : 고시
- 토지세목여부 : ○
- 인허가권자 : 시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

■ 특례

- 재결신청기간 : 사업시행기간 이내 (법 제10조제2항)

■ 목적사업이외의 시행가능사업 (법 제17조)

-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
- 산업단지개발사업(국가,일반,농공)

■ 목적

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·보전하며 하천의 유수(流水)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·관리·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(법 제1조)

■ 대상 공익사업 : 하천공사 (법 제78조제1항)

- 사업 시행자 : 하천관리청 등 (법 제28조, 29조, 30조)
- 수용주체
  - 하천공사를 하는 하천관리청 또는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자 또는 하천공사 허가를 받은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(행정기관·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에 한함) (법제78조제1항)

■ 상위 법정 계획

- 하천기본계획(국가하천) (법 제25조)
- 하천기본계획(지방하천) (법 제25조)

■ 사업인정의제 인허가 등 : 하천공사 시행계획수립·고시(하천관리청), 하천공사 실시 계획의 수립·고시(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경우) (법 제78조제3항, 제27조, 제30조)

- 공고·고시 : 고시
- 토지세목여부 : ○
- 인허가권자 : 하천관리청 (국가하천: 국토교통부장관, 지방하천: 시도지사)

■ 특례

- 재결신청기간 : 해당 하천공사의 사업기간 내 (법 제78조제3항)
- 재결 관할 : -

■ 목적사업이외의 시행가능사업 (법 제32조)

-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

■ 목적

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시설의 설치·이전 및 확장을 위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, 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학교시설 사업을 쉽게 함으로써 학교환경 개선과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 (법 제1조)

■ 대상 공익사업 : 학교시설사업 (법 제10조제1항)

- 사업 시행자 : 국가나 지방자치단체,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(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제외) (법 제4조)
- 수용주체 : 사업시행자 (법 제10조제1항)

■ 상위 법정 계획 : -

■ 사업인정의제 인허가 등 :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및 고시 (법 제10조제3항 제4조제7항)

- 공고·고시 : 고시
- 토지세목여부 : ○
- 인허가권자 : 교육부장관(국립), 교육감(공립·사립)

■ 특례

- 재결신청기간 : 시행계획을 승인할 때 정한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기간 내 (법 제10조제3항)

■ 목적사업이외의 시행가능사업 (법 제5조)

-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

## ■ 목적

한강수계 상수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(水質改善) 및 주민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 (법 제1조)

## ■ 대상 공익사업 :

- (1)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(법 제14조제1항)
- (2) 수질개선사업 (법 제14조제1항)

- **사업 시행자** : (1) 환경부장관, (2) 특별시장·광역시장·시장·군수
- **수용주체** : (1)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(법 제14조제1항)  
(2) 수질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자 (법 제14조제1항)

## ■ 상위 법정 계획

-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 (법 제4조의2)
-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(법 제8조의2)
-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(법 제8조의3)
- 수질개선사업계획 (법 제13조)
- 한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물질삭감 종합계획 (법 제24조)

- **사업인정의제 인허가 등** : (1)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의 시행계획 고시(법 제14조제2항, 제4조의3)  
(2) 수질개선사업계획에대한 승인( (법 제14조제2항, 제13조)

- **공고·고시** : (1) 고시, (2) -
- **토지세목여부** : (1) -, (2) -
- **인허가권자** : 환경부장관

## ■ 특례

- **재결신청기간** :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 (법 제14조제2항)
- **재결 관할** : 중앙토지수용위원회(법 제14조제4항)

## ■ 목적사업이외의 시행가능사업 : -

■ 목적

한국가스공사를 설립하여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 증진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 (법 제1조)

■ 대상 공익사업 : 천연가스의 인수·저장·생산·공급설비 및 그 부대시설 설치공사 (법 제16의2조제1항, 제16조의3제1호)

- 사업 시행자 : 한국가스공사
- 수용주체 : 한국가스공사 (법 제16조의3)

■ 상위 법정 계획 : -

■ 사업인정의제 인허가 등 : 천연가스의 인수·저장·생산·공급 설비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공사(가스사업)를 하기 위한 가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(법 제16의2조제1항, 제16조의3제1호)

- 공고·고시 : 고시
- 토지세목여부 : ○
- 인허가권자 : 산업통상자원부장관

■ 특례 : -

■ 목적사업이외의 시행가능사업 (법 제16조의3)

-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

## 연번 102 : 한국석유공사법

### ■ 목적

한국석유공사를 설립하여 석유자원의 개발, 석유의 비축, 석유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(법 제1조)

### ■ 대상 공익사업 : 석유의 탐사·개발·비축 및 수송사업 (법 제17조제1항)

- 사업 시행자 : 한국석유공사
- 수용주체 : 한국석유공사 (법 제17조제1항)

### ■ 상위 법정 계획 : -

### ■ 사업인정의제 인허가 등 : 사업인정의제 규정 없음

### ■ 특례 : -

### ■ 목적사업이외의 시행가능사업 : -

## 연번 103 : 한국수자원공사법

### ■ 목적

한국수자원공사를 설립하여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·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(법 제1조)

### ■ 대상 공익사업 : (법 제24조제1항)

- (1) 수자원개발시설의 건설 및 운영·관리
  - (2) 수도 시설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사업
  - (3)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·관리
  - (4)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개발사업
  - (5) 신·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운영·관리사업
- 사업 시행자 : 한국수자원공사
  - 수용주체 : 한국수자원공사 (법 제24조제1항)

■ 상위 법정 계획 : -

■ 사업인정의제 인허가 등 : 실시계획 승인·고시(법 제24조제2항, 제10조)

- 공고·고시 : 고시(관보)
- 토지세목여부 : ○
- 인허가권자 : 환경부장관, 국토교통부장관

■ 특례

- 재결신청기간 :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내 (법 제24조제2항)
- 재결 관할 : 중앙토지수용위원회(법 제24조제3항)

■ 목적사업이외의 시행가능사업 (법 제18조)

-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

**연번 104 : 한국환경공단법(한국환경공단법)**

■ 목적

한국환경공단을 설립하여 환경오염방지·환경개선·자원순환촉진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에 이바지 (법 제1조)

■ 대상 공익사업 : (법 제20조제2항, 법 제18조제1항)

- (1)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·운영사업
- (2)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·운영사업
- 사업 시행자 : 한국환경공단
- 수용주체 : 한국환경공단

■ 상위 법정 계획 : -

■ 사업인정의제 인허가 등 : 법 제19조제1호, 제18조

- (1)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·운영사업 실시계획 승인·고시
- (2)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·운영사업 실시계획 승인·고시
- 공고·고시 : (1) 고시, (2) 고시

- 토지세목여부 : (1) ○, (2) ○
- 인허가권자 : (1) 환경부장관, (2) 환경부장관

## ■ 특례

- 재결신청기간 : -
- 재결 관할 : -

## ■ 목적사업이외의 시행가능사업 (법 제19조)

-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

## 연번 105 : 공항시설법

## ■ 목적

공항·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공산업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(법 제1조)

## ■ 대상 공익사업 :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(법 제12조제1항, 법 제5조제1항)

- 사업 시행자 : 국토교통부장관 (법 제6조)
- 수용주체 : 사업시행자 (법 제12조제1항)

## ■ 상위 법정 계획

- 항공정책기본계획 (항공사업법 제3조)
- 국가기간교통망계획 (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)
-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(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조)
- 공항개발 종합계획 (법 제3조)
- 공항개발 기본계획 (법 제4조)

## ■ 사업인정의제 인허가 등 : 공항개발사업 및 비행장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 또는 승인·고시 (법 제12조제2항, 제7조)

- 공고·고시 : 고시
- 토지세목여부 : ○
- 인허가권자 : 국토교통부장관

## ■ 특례

- **재결신청기간** :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내(법 제12조제3항)
- **재결 관할** : 중앙토지수용위원회(법 제12조제4항)

## ■ 목적사업이외의 시행가능사업 (법 제8조)

-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
-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
- 항만공사사업

## 연번 106 : 항만공사법

## ■ 목적

항만공사를 설립하여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·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항만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(법 제1조)

- **대상 공익사업** : (1) 항만시설공사 (법 제21조)  
(2) 신항만건설사업 (법 제21조의2)

- **사업 시행자** : 항만공사
- **수용주체** : 항만공사 (법 제26조제1항)

## ■ 상위 법정 계획

- (1) 항만기본계획(항만법 제5조), 마리아항만에 관한 기본계획(마리아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)
- (2) 신항만건설 기본계획(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)

## ■ 사업인정의제 인허가 등 :

- (1) 항만시설공사의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 (법 제26조제2항, 제22조)
  - (2) 신항만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 (법 제26조제2항, 제22조)
- **공고·고시** : (1) 고시(관보), (2) 고시(관보)
  - **토지세목여부** : (1) -, (2) ○
  - **인허가권자** : 해양수산부장관(승인)

## ■ 특례

- **재결신청기간** :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사업 시행기간 이내 (법 제26조제2항)

## ■ 목적사업이외의 시행가능사업 (법 제23조)

### (1) 항만시설공사

-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
-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
- 관광숙박업
-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
- 마리나항만개발사업
- 철도건설사업
- 체육시설 설치·이용사업
- 택지개발사업

### (2) 신항만건설사업

-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
- 철도건설사업
- 물류터미널(복합, 일반) 사업
- 산업단지개발사업(시행자 지정, 실시계획)
-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(실시계획)
-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
- 전원개발사업
- 체육시설 설치·이용사업

## 연번 107 : 항만법

## ■ 목적

항만의 지정·개발·관리·사용 및 재개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과 그 주변 지역 개발을 촉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(법 제1조)

## ■ 대상 공익사업 : (1) 항만공사 (법 제77조제1항)

- (2)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
- (3) 항만재개발사업

- **사업 시행자** : 국가 등 (법 제9조, 59조)
- **수용주체** : (1)해양수산부장관, (2)(3)사업시행자 (법 제77조제1항)

## ■ 상위 법정 계획

- 항만기본계획 (법 제5조)
-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(법 제41조)
- 항만재개발기본계획 (법 제51조)
- 항만재개발사업계획 (법 제54조)

## ■ 사업인정의제 인허가 등

- (1) 항만공사실시계획의 공고 (법 제77조제2항, 제10조제1항)
- (2) 항만배후단지 지정의 고시 (법 제77조제2항, 제43조)
- (3) 항만재개발사업계획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구역의 지정·고시 (법 제77조제2항, 제56조제1항)

■ **공고·고시** : (1) 공고, (2) 고시(관보, 공보), (3) 고시

■ **토지세목여부** : (1) -, (2) ○, (3) -

■ **인허가권자** :

- (1) 항만공사실시계획 : 해양수산부장관(직접 시행, 승인)
- (2)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: 해양수산부장관
- (3) 항만재개발사업: 해양수산부장관

## ■ 특례

- **재결신청기간** : (1) 항만공사실시계획에서 정하는 공사시간 (법 제77조제2항)  
(2)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
(3)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

## ■ 목적사업이외의 시행가능사업 (법 제85조)

-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
-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
- 관광숙박업
-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
- 산업단지개발사업(국가, 일반, 도시첨단, 농공)
- 체육시설 설치·이용사업
- 택지개발사업

■ 목적

해수욕장의 이용·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 휴양공간으로 조성하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 (법 제1조)

■ 대상 공익사업 : 해수욕장시설사업 (법 제38조제1항)

- 사업 시행자 :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등 (법 제36조)
- 수용주체 : 관리청 (법 제38조제1항)

■ 상위 법정 계획

- 해수욕장 기본계획 (법 제9조)
- 해수욕장 관리계획 (법 제13조)

■ 사업인정의제 인허가 등 : 해수욕장시설사업 실시계획의 공고 (법 제38조제1항제2호, 제37조제4항)

※ 실시계획 수립 또는 승인전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필요(법 제38조제2항)

- 공고·고시 : 공고(공보, 인터넷 홈페이지)
- 토지세목여부 : -
- 인허가권자 :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

■ 특례 : -

■ 목적사업이외의 시행가능사업 (법 제38조)

-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
- 체육시설 설치·이용사업

■ 목적

대한민국의 영토인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해역(海域)이나 대한민국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가 미치는 대륙붕에 부존(賦存)하는 해저광물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산업 발전에 이바지 (법 제1조)

■ 대상 공익사업 : 해저광물의 탐사 또는 채취 (법 제30조제1항)

- 사업 시행자 : 해저조광권자
- 수용주체 : 해저조광권자 (법 제30조제1항)

■ 상위 법정 계획

-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(10년) (법 제2조의2)
- 해저광물자원개발 연도별 시행계획 (영 제2조의2)

■ 사업인정의제 인허가 등 : 해저조광권자의 해저광물 탐사 또는 채취에 대한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의 인정 (법 제30조제2항 및 제1항)

- 공고·고시 : -
- 토지세목여부 : -
- 인허가권자 : 산업통상자원부장관

■ 특례 : -

■ 목적사업이외의 시행가능사업 : -

■ 목적

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 (법 제1조)

■ 대상 공익사업 : (1) 공영차고지 설치 (법 제46의5조제1항)

(2)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 (법 제46조의5제1항)

- 사업 시행자 : (1) 시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(법 제45조) (2) 국가 등(법 제46조의3)
- 수용주체 : 공영차고지의 설치사업을 시행하는 자 (법 제46조의5제1항)  
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 (법 제46조의5제1항)

■ 상위 법정 계획 : 화물자동차 휴게소 종합계획 (법 제46조의2)

■ 사업인정의제 인허가 등 :

- (1) 공영차고지 설치·운영계획의 수립·인가 및 공고 (법 제46의5조제2항, 제45조제2항및제3항)
- (2)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계획의 승인 및 고시 (법 제46의5조제2항, 제46조의3제8항)

- 공고·고시 : (1) 고시(공보) 또는 게재(일간신문 등), (2) 고시
- 토지세목여부 : (1) -, (2) ○
- 인허가권자 : (1) 시·도지사(수립, 인가), 시장·군수·구청장(수립)  
(2) 시·도지사, (2) 국토교통부장관

■ 특례

- 재결신청기간 :
  - (1) 설치·운영계획에서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내 (법 제46조의5제3항)
  - (2) 건설계획에서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내 (법 제46조의5제3항)

■ 목적사업이외의 시행가능사업 (법 제46조의4)

-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
- 도시개발사업
- 산업단지개발사업(국가, 일반, 농공)
- 향만공사사업